

세미나 자료집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대책 세미나

일 자 : 2008년 5월 14일(수) 13:30~17:30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2층 금강홀

법 무 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세미나 진행일정

- 13:30 - 14:00 등록
- 14:00 - 14:10 개 회 사 : 박 상 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5
- 14:10 - 14:20 인사말씀 : 문 성 우 법무부차관 7
- 사 회 : 전 영 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4:20 - 15:10 제1주제 : 성폭력 범죄자 유형별 심리특성 및 재범 억제
 대책 모색 11
- 발표 : 이 수 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 토론 : 채 규 만 (성신여자대학교 심리복지학부 교수)
- 주 점 속 (법무부 교정본부 교육교화팀장)
- 15:10 - 16:00 제2주제 :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감독제도 효율화 방안 65
- 발표 : 김 혜 정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토론 : 강 은 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형 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보호정책과 서기관)
- 16:00 - 16:20 휴 식
- 16:20 - 17:10 제3주제 :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특별법과 양형정책의
 개선방안 95
- 발표 : 김 한 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토론 : 이 경 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김 공 주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형사7부 검사)
- 17:10 - 17:30 종합토론(질의 및 응답)

개 회 사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법무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대책”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법무부와 공동으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학문적, 실무적 차원에서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실태 및 원인을 파악하려는 경험적 연구들이 축적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성폭력범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도소에서는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프로그램들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동시에 재범방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시간적, 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노력들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러한 노력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성폭력범죄자 유형별 심리특성 및 재범 억제 대책 모색 및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감독방안, 그리고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규정 및 양형정책의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귀한 발표를 해 주실 경기대학교의 이수정 교수님, 영남대학교의 김혜정 교수님 그리고 본 연구원의 김한균 전문연구원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각 주제마다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청중 여러분들께서

도 고견을 개진하여 오늘 이 자리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훌륭한 토론을 해주실 분들과 행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 5. 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박 상 기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록의 계절 5월은 어린이날,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은 희망과 행복, 평화를 상징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 사건 등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을 모시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경기대 이수정 교수님, 영남대 김혜정 교수님,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한균 전문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신여자대학교 채규만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와 구치소에는 성폭력사범이 약 5,000명 수감되어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범은 전체 성폭력사범의 10%인 5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 95%는 10년 이내에 형기를 마치고 우리 사회에 복귀하게 됩니다.

교도소의 명칭이 형무소 또는 감옥에서 교도소로 바뀐 것이 말해주듯이, 단순히 응보적 개념이 아닌 교정·교화를 통한 교육형개념에 따라 수형자들을 형기 내에 교정·교화시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교정행정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형자를 완전하게 교정·교화시키기에는 우리의 현실 특히 교정행정의 여건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정·교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상습성을 띠는 성폭력문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아동성폭력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살해할 경우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금년 10월에 시행되어 전자발찌제가 도입됩니다.

타 범죄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등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치밀한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이 세미나는 제도적인 접근방법들을 보다 더 완성도 높은 구체적인 방안들로 만들어 나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성폭력범죄자 유형별 심리특성 및 재범 억제 대책 모색',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감독제도 효율화 방안' 그리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특별법과 양형정책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 또는 여성 대상의 성폭력범죄가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은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지대함을 감안할 때 사전예방이 최선임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경찰 및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 및 양형, 그에 따른 수형 또는 치료 그리고 출소 후 보호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성폭력범죄자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세미나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각종 형사정책과 법무 및 교정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5. 14.

법무부차관 문 성 우

[제1주제]

성폭력범죄자 유형별 심리특성 및
재범 억제 대책 모색

[발 표]

이 수 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토 론]

채 규 만 (성신여자대학교 심리복지학부 교수)

주 점 속 (법무부 교정본부 교육교화팀장)

성폭력범죄자 유형별 심리특성 및 재범 억제 대책 모색

이 수 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는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06년도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현황에서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강간 범죄의 발생율이 현저히 높았는 바, 강간 발생은 전년도에 비해 19.6%나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¹⁾ 강간의 발생 건수는 2002년도 6,119건에서 2006년도 8,759건으로 매해 평균 9%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경찰청 홈페이지, 2007). 단순한 발생율 증가 이외에도 최근에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특성은 점점 더 심각한 양상으로 변지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더 이상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만이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나아가 동성 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연쇄성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단순강간으로 끝날만한 사건들의 경우에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007년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대학생이나 성인 피해자의 10명 중 9명은 일회성 피해만을 입었던 데 비해 유아(3%)와 청소년(초등 5%, 중등 4%, 고등 7%)은 1개월에서 길게는 2년 가까이 지속적, 반복적인

1) 같은 기간 살인과 절도는 각각 1.1%, 2.1%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강도와 폭력은 오히려 각각 6.4%, 1.2% 줄었다(경찰청 홈페이지, 2007).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²⁾ 또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성범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교단에서 물러난 뒤 6년 만에 다시 초등교사로 임용되어 1년 간 여자 아이들을 성추행 해오다가 털미가 잡힌 사건, 여자아이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영장이 기각되어 풀려 난지 하루 만에 다시 성추행 혐의로 붙잡히는 사건 등 연일 성범죄에 대한 보도³⁾로 일반시민들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이를 데 없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안양 혜진이·예슬이 사건과 일산 초등생 폭행사건에 이르면 시민들의 경각심은 단순한 공포와 염려의 수준을 벗어나 폭발적 분노로 바뀌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동요에 대해 정부는 최근 성범죄 고위험군에 대하여 다양한 형사정책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자들의 경우 별도의 엄벌주의적 처벌을 적용할 것이라 표명한 바 있다. <표 1>에서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사성교행위의 경우 현행 3년이던 시설수용 기간을 7년으로 대폭 연장한다거나 아동 대상 강제추행에 대하여 시설수용의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는 이미 2000년부터 도입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으며, 2008년 10월부터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여 성폭력범죄자를 치료를 목적으로 형기 종료 후 치료감호소에 입원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시도라 생각된다.

2) 한국일보(2007년 10월 1일) 기사에서 인용함.

3) SBS 뉴스(2006년 6월 19일)와 YTN 뉴스(2006년 6월 19일)에서 인용함.

<표 1> 헤진·예슬법 주요 개정 내용(13세 미만 상대 성범죄)

주요 내용	개정 및 신설 조항	현행
강간	7년 이상 유기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성교행위	7년 이상 유기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벌금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벌금
성폭력 범죄 후 살해	무기징역 또는 사형	별도조항 없음
성폭력 범죄 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	별도조항 없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범을 포함하여 상습적인 성범죄자들에 대해 법무부가 예고한 정책들은 대부분이 구금 위주의 자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미 법무부 교정프로그램 담당부서(Office of Justice Program)는 성범죄자들에 대하여서는 사회로부터의 격리 이외에 보다 적극적인 치료사법적 대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지적한다. 예컨대 유기징역의 기간과 벌금을 높이는 것만이 성범죄자들의 범의를 제지할 수는 없으며 치료적 개입이 집행되는 것이 재범을 억제에 틀림없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참조, <http://www.ojp.usdoj.gov>).

엄벌주의적 격리만으로 재범이 억제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일산 아동 성추행사건이다. 범인은 반복적인 아동 대상 성폭력 행위로 10년간이나 구금이 되었다 출소하여 6개월도 지나기 전에 재범을 하였다. 그는 심지어 CCTV가 부착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까지 여아를 잔인하게 폭행하고 끌고 가려 했다. 그는 당장 신분이 발각될 위험 앞에서도 자신의 범의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였으며 충동의 노예가 되어 폭력을 휘두르는 성범죄 상습범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 사례를 토대로 보자면 구금기간을 늘리기만 하는 형사정책이, 우리가 법 개정을 통해 기대하는, 성범죄에 대한 범죄억제력을 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추정케 한다. 따라서 이 사례는 구

금기간의 연장이 곧 성범죄 근절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보다 더 적극적인 대안, 즉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논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또다른 문제점은 모든 성범죄자들에 대한 일괄적 형사정책이 이들에게 재범억제력을 동일하게 야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우는 그들의 위험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행형법에도 개별화된 처우를 보장함으로써 집행의 묘를 발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는 자신의 재범위험성에 따라 사회 내 등록제도에서부터 흉악범에 대한 부정기적 입원 격리까지 다양한 처분을 받는다(이수정, 2007). 이와 같은 다양한 형사정책적 방안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들의 범행특성 및 재범가능성에 대한 위험성 평가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죄질의 개선여부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에서처럼 판결전 조사나 신입심사 때만 집중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시설수용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가석방의 결정에까지 널리 적용한다. 즉 성범죄에 대하여서는 사회의 안전 유지를 담보로 하여 다른 범죄군에 비하여 보다 더 치밀한 평가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성범죄자들을 하위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해 차별적 제재조치를 적용하려는 노력(Hanson, 1997; Hanson & Bussier, 1998; Hanson & Thornton, 2000)은 미국 뿐 아니라 영국이나 독일에서도 널리 일반화되어 있으며, 단계적 형사정책 방안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을 분류하고 선별하는 것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사실에 이들 국가의 사법기관은 동의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성범죄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분야는 나날이 수많은 연구업적을 축적해가고 있는 것이다.

<표 1>의 법무부 대책에서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사항은 이 같은 징벌의 가중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형사범을 대상으로 해서만이란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통계의 가장 큰 문제

는 사실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문제이다. 그 이유는 조사과정 중 피해자가 당하게 되는 2차 피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피해자를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은 성폭력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사실상 가해자를 검거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구속 여부는 1996년 55.1%였던 것이 2006년 28.8%로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처분의 결과 역시 1996년 38.5% 정도가 불기소 되었으나 2006년 49% 정도까지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있다(김지선, 이천현, 홍영오, 박형민, 김한균, 권수진, 2007). 이와 같은 추세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가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불편함만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염려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성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암수범죄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에 이르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는데, 이는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함으로서 가정된다. 선진국의 형사사법기관은 바로 이 점에 주목을 하여 아동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매우 전문화된 조사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기소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Hershkowitz, Orbach, Lamb, Sternberg, & Horowitz, 2001). 예컨대 인지면담기법이나 현실모니터링기법 등이 그것인데, 이 같은 조사기법은 아동의 진술특성을 가능한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조사절차를 형사사법기관의 소송 실무자들이 공유함으로써 기소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본 연구는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도적 대안 마련보다는 미시적 차원에서 치료적 접근을 제안하고자 시도하였다. 예컨대 성범죄자의 입장에서 성폭행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떠한 동기적 측면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들의 범죄심리학적 특성은 무엇이며 이와 같은 심리특성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지 등 지금까지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다루었던 주제와는 각도를 달리하여 성범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II. 성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심리특성을 중심으로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들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그들의 범죄성향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인구사회적 특징보다는 이들의 심리특성에 보다 초점을 두어 설명을 해보려고 하였다. 이들 심리특성들은 추후 시설 내에서 집행될 수 있는 심리치료 방안의 개발에 직접적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2.1. 발달과정 상 특성

성범죄자는 성장과정에서 성적학대나 다른 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는 경향이 많고 가족과의 관계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Hall & Barongan, 1997).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타인과의 관계형성에도 어려움을 보이는 등 초기 대인관계부터 장애가 있다. 이들은 부모를 모두 적대시하고(Levant & Buss, 1991) 어머니와의 관계가 상호적이지 못하고(Tingle, Bernard, Robbin, Newman & Hutchinson, 1986),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낮고 이러한 경향은 강압 등을 통한 성범죄와 관련이 되어 나타난다.

2.2. 성격적 특성

성범죄자(Malamuth & Brown, 1994)는 반사회적, 병리학적 생활방식과 같은 특징적 생활양식을 보인다. 이들은 높은 수준의 반사회적 성향을 지니며,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및 자기행동에 대한 자책감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위

를 숨기고자 하는 성향을 보인다. 특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는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즉 공감능력의 결핍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분노를 혐오로, 두려움을 놀라움으로 대부분 잘못 인식한다(Hudson, Jones, Marshall, Wales, McDonald, Bakker & McLean, 1993). 자기 보고식 질문에 의하면 이들은 여성의 주장은 적대적으로, 다정한 것은 유혹하는 것으로 여성의 감정을 해석하는 데 무능했으며(Malamuth & Brown, 1994), 강간범은 피해자들 역시 성을 원하고 즐거워한다고 잘못된 인식을 한다. 또한 이들은 자기도취적 성향을 가진다. 이들은 성-공격적인 행동에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나 힘을 나타내려하고 성범죄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잊고자 한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정신분열적 성향은 사회성 부족, 소외감, 둔마된 단조로운 정서행위 등이다. 친구와 또래 집단이 부족하며 주요한 타인과의 관계가 매우 빈약하고 사회관계 자체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의 경계선적 성향은 대인관계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고 소유욕이 강하며, 질투심이 많고, 의존성향이 높게 만든다. 사고도 매우 극단적이며 양분적인 경향이 강하며, 자신과 타인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보인다. 수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이 부족하며, 특히 분노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성향이 두드러진다. 분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방해물을 만드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해리적 성향은 행동이 의식과 분리되어 표출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성과 관련된 일탈적 환상에 빠지는 경우가 흔하고, 내적으로 지나치게 몰두하기도 한다. 일상적인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고와 행동에 몰입하며, 사고와 행동이 성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지고 있다(Carich, Newbauer & Stone, 2001).

2.3. 인지적 왜곡

성범죄자들이 지니는 가장 대표적인 인지적 왜곡은 부인(denial)과 축소(minimization)이다. Maletzky(1991)의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의 87%가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축소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부인과 축소가 의도적이 아닌 비의도적 인지적 오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즉, 성폭력이 벌어진 당시의 사건에 대한 지각에 오류가 있어서 범행과 관련하여 본인은 사실을 말한다고 생각하나 그 판단 자체가 오류인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는 강간을 범한 사람들은 여성들이 이에 동의했거나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으나 마음을 바꾸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대개 처음에는 반항을 하지만 가해자들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이 가해자의 분노를 더욱 촉발시키거나 반항을 하게 되면 더 큰 해를 입을 것에 대한 공포가 생긴다. 또한 체력적으로 소진하게 된다. 강간범들은 대개 이런 상황을 반항에서 동의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착각은 이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데 매우 서투르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Hudson 등(1993)은 실제 강간범과 아동 성폭력범들이 분노, 혐오, 공포를 종종 긍정적인 감정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의 강압적인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고분고분하게 복종하고 자신만큼 열정적으로 반응한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장면에서도 그들이 즐기고 있다고 믿고 그런 정보를 선택적으로 찾아 처리하는 것이다. 아동 성폭력을 가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이 미치는 위해에 대해서 잘못된 지각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잘 지내고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성행위가 아니라고 믿고 있으므로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아버지로서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아동 역시 그것을 즐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근친의 경우 아동에게 교육을 시켜 아동 역시 그렇게 믿곤 한다).⁴⁾

4) 신의진 (2006) ; 연세대학교 정신과학교실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개발연구

<표 2> 성폭행 가해자들의 부인과 축소 (Marshall, 1999)

<완전한 부인>

잘못된 고소이다

- 경찰이 나를 잡으려고 덮어씌웠다.
- 피해자가 나를 미워한다.
- 피해자의 어머니가 내가 그녀를 못 만나게 하려고 또는 복수하려고 이용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다

- 다른 사람이 한 것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 이상하다.
-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부분적 부인>

그건 성학대가 아니다.

- 피해자가 동의했다
- 피해자도 즐겼다
- 그녀는 창녀였다.
- 그가/그녀가 자신은 나이가 더 많다고 그랬다.
- 나는 그냥 문지르기만 했다.
- 성기에 약을 발라주고 있었을 따름이다.
- 단지 놀이일 뿐이다.

<문제의 부정>

-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난 성폭력 가해자는 아니다.
-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 나는 아이들이나 억지로 하는 성행위에 전혀 관심이 없다
- 나는 일탈적인 환상 따위는 없다.

<공격행위의 축소>

- 피해자의 증언보다 횡수가 적다.
- 폭력이나 위협은 없었다.
- 피해자가 말하는 만큼 침입적인 것은 아니었다.
- 다른 피해자가 없다.

<책임의 축소>

- 피해자가 유혹적이었고 성폭력을 유발했다.
- 피해자의 부모가 무시한다
- 나는 취했었다.
- 나는 스트레스가 많았다/ 정서적으로 혼란되어 있었다.
- 내 파트너는 성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
- 나는 성충동이 높은 사람이다.
 - 피해자는 NO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Yes를 의미하고 있었다.

<위해의 부인과 축소 >

- 친구나 가족들이 피해자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줬다.
- 피해자의 현재 문제는 내가 유발한 것이 아니다.
- 나는 사랑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를 유발할 수 없다.
- 억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가 있을 수 없다.

<계획의 부인과 축소>

- 나는 순간적으로 일을 저지른 것 같다.
- 갑자기 일이 펼쳐졌다.
- 피해자가 시작했다.

<환상(fantasy)의 부인과 축소>

- 나는 일탈적인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 나는 실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피해자를 범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다.
-

그러면 이들은 왜 부인과 축소와 같은 인지적 왜곡을 일으키는가? 첫 번째로는 이들이 학습한 성역할 또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개념으로 Malamuth(1981)의 강간통념(rape myth)과 같은 것이 있다. Malamuth(1981)는 강간범이 일반인에 비해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다는 것과 강간에 대한 묘사에 성적인 흥분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보통 사람도 약 35%에서는 강간통념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만의 독특한 특성은 아니지만 그 수용도가 더 높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Burt(1980)는 일반인(60%는 여성)과 강간범들에게 다양한 성적인 폭력 장면을 보여주고 가해자의 폭력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성역할에 대한 더 강한 고정관점이 있거나 폭력 자체에 대한 수용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가해자에게 덜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강간범의 경우는 심지어 그 사람의 공격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하려 노력하였고, 폭력에 대해 나쁘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성폭력의 대상자가 아동인 경우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정도가 더욱 심하고 분명하게 드러난다(Abel 등, 1989). Howells(1979)

는 입원된 아동 성학대자가 수감된 통제집단에 비해 남녀관계를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여자를 외모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아동을 덜 위협적이고 성인보다 관계 맺기 쉬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4. 사회성

성폭력 가해자의 사회적 기능을 다루는 이슈는 수년간 걸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1970년대 초기에 인지행동 치료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Marshall(1971)은 가족이 아닌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회적 결함에 대해 언급했다. Marshall(1989)은 이후 친밀한 관계에서 만족을 얻는데 대한 능력의 결함이 성폭력 가해자로 하여금 아동이나 동의하지 않는 성인에게서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원인을 제공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의 핵심적인 생각은 성적인 가해자들이 성행위에서 친밀감을 발견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성적 행동일지라도 그들의 해소되지 않은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Marshall의 이론은 의미하는 바가 많은데 실제적으로도 명확한 것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사실 친밀감의 결여와 만성적인 외로움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다. Lisak(1984)과 Mullen, Martin, Anderson, Romans과 Harbison(1994)도 어린 시절 성적인 학대를 받은 비가해자들 역시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한 대인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어린 시절의 성적인 학대 경험은 성폭력 가해자의 혼란 양상이기 때문에 가해 경험과 성인기의 친밀감 사이의 강한 연관성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친밀감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2.5. 성적 환상

가학적 범죄의 동기원으로 환상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번 밝혀진 바 있다.

가학적 범죄 시 그들의 마음상태는 환상 상태에 놓여있고, 한 번 성적살인을 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연쇄살인(성적)을 한 집단은 환상과 좀더 의미있게 관련되어 있었다(Grubin, 1999). 이것은 실제적으로 면접자들에서 뿐만 아니라, 관음증과 물품도착(fetishism)과 같은 행동과, 상상에서 나타난 것을 사전 연습하는 범죄와 조직화된 범죄현장을 남기는 습관을 지닌 범죄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성적 환상과 관련된 연구 중 하나는 ‘왜 가학적 범죄자가, 그들의 환상 상태에서 범행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과 ‘유사한 환상을 지닌 성격장애자들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는 범죄자의 나르시시틱하고 반사회적 특성들을 함께 설명해낸다. 또 다른 접근방법은 과거력과 행동적 변인을 찾는 것인데, 성적 환상은 부모와 분리되었던 과거력, 신체적·성학대와 가학적 범죄자들에게 있는 성도착적 행동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다. 그들은 좀 더 나아가 초기 애착관계, 초기 외상, 폭력적 환상의 일상 및 환상과 행동이 그들의 사고패턴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Burgess et al., 1986; Dietz et al., 1990). 이런 환상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환상은 틀림없이 가학적 범죄자에 있어 중요한 위험인자이지만, 성적 환상 그 자체가 성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환상의 전이, 단계적인 행동실행이나 범죄가 고무된 불분명한 고리 등이 함께 작용되어야 최종적인 가학적 성범죄가 형성됨(Grubin, 1999)을 알 수 있다.

2.6. 고 립

성적 살인범과 강간범의 비교를 통해 발견된 흥미로운 결과는, 성적 살인범들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강간범들에 비해 고립감의 정도, 사회성 및 정서성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Brittain, 1970; MacCulloch et al., 1983, Dietz et al, 1990; Boss, 1949).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살인범은 대부분 매

우 고독한 사람이었고 어느 또래집단에도 속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성인인 경우 거의 1/3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접촉을 하지 않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었다. 살인자의 거의 반은 범행 당시 혼자 살고 있었으며 60% 이상은 그들의 인생에서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본 경험이 없었고, 나눔과 신뢰 상황에서 감정을 경험한 것이 없었다. 성적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중 86%는 성장환경 상 이와 같은 특성들 중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및 정서적 고립은 가학적 범죄자와 성적 살인범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Brittain(1970)은 가학적 살인범은 내향적이고, 소심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말했으며, MacCulloch 등(1983)은 유년기에 가학적 범죄자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보고하였고, Boss(1949)도 가학적 변태성욕자를 “wall of grey glass”라고 기술하면서 이들은 세상과 괴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2.7. 정서공감력

최근에 연구자들은 성범죄자가 피해자의 명백한 고통 호소에도 불구하고 가해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성범죄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Fernandez, Marshall, Lightbody & O’Sullivan, 1999; Langevin, Wright & Handy, 1988; Malamuth, 1988; Marshall, O’Sullivan & Fernandez, 1996). 이런 시각은 Mosher와 Sirkin의 연구(1984)로부터 기인하는데, 그들은 남성성의 과도함을 설문(hyper-masculinity inventory)을 통해 물어봄으로써 이와 같은 성향이 낮은 공감능력과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극단적인 남성성을 피력할수록 고통을 겪는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극단적인 남성성 점수는 자가 보고된 강간 가능성(Smearson & Byrne, 1987)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나아가 Mosher와 Anderson(1986)은

과도한 남성성 점수가 성적 가해에 실제로 참여하였다고 보고한 응답자들의 과거력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과도한 남성성 설문지의 하위 문항 중, Calloused Sex Attitude Subscale은 특히 성범죄자의 피해자에 대한 공감의 결여를 반영한다. 명백히 공감능력이 낮은 사람은 타인을 향한 공격성을 억제할 줄 모르며 따라서 성범죄 행위에 대한 제어력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범죄자들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일반적인 공감능력 상에서는 성범죄자가 유독 공감능력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음을 종종 보고한다. Marshall, Hamilton과 Fernandez(1998)는 이와 같은 공감능력의 결핍이 확인되지 않는 현상은 성범죄자들의 공감결여가 다만 자신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서만 국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연구자들은 아동 성범죄자, 비성적 범법자, 비범법자 남성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측정하고 Abel 등 (1989)이 개발한 인지적 왜곡의 정도를 측정하여 상호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아동 성범죄자들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하여 현저한 공감의 결핍을 보였다. 또한 다른 두 집단보다 훨씬 큰 인지적 왜곡도 보였다. 중요한 사실은, 아동 성범죄자들의 피해자 대상-특정적 공감의 결핍이 그들의 인지적 왜곡 측정 점수와 강하게 연관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들 가해자에서 보이는 명백한 공감 결핍은 자신의 행동의 해로운 결과에 대한 왜곡일 뿐이리라는 것이다.

2.8. 자존감

연구자들은 자존감과 난폭한 행동과의 연관성을 제안한 바 있다. 성폭행 가해자의 알려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을 비교하면 상당한 공통점이 많이 있다. 연구자들은 많은 경우 낮은 자존감이 공격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에 동의한다. 공격적인 행동은 자신보다

약하고 무력한 존재에게 향해지고 되고, 여자나 아이들은 쉽게 그 대상이 된다. 자존감이 낮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특성을 Baumeister(1993)와 Marshall (1996)은 다음 표와 같이 설명한다.

<표 3>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 (Marshall, 1996)

<p>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낮은 수준의 파트너를 찾는다. 대인관계가 좋지 않다.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다.</p>
<p>인지적 왜곡을 갖는다.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난한다. 정서적인 고통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한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자신이 잘못하거나 실패할 것이라 예상한다. 성취의 목표를 낮게 잡는다. 계획표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자신을 매력적이지 않다고 본다. 예방적 프로그램에서 쉽게 탈락한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순응도 결과)</p>

이렇게 이론가들은 낮은 자존감과 성폭행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낮은 자존감과 공감 능력의 어려움은 사회적 능력의 일반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성폭행 가해자들이 연애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능력을 절하시킨다. Marshall과 그의 동료들은 성폭행 가해자들의 외로움과 친밀감의 결여는 부적당한 애착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낮은 자존감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흔히 보이는 인지적 왜곡과도 관계가 있다. 가해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인지적인 왜곡은 자기고양 편파(self-serving bias)로서, 사건에 대한 자신의 해석,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주관적 해석,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한 해석 등에서 발생하게 된다. 자기중심적인 해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로 인해 자신의 자존감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즉 부인과 축

소와 같은 합리화의 기제는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책이라는 것이다.

III. 성범죄 위험성에 대한 평가

3.1.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란?

형사사범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범죄자를 평가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판결 전 단계에서의 구형인자 조사, 판결단계의 양형인자 탐색, 그리고 교정단계에서 계호나 처우를 결정하기 위한 범죄자 평가가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Bonta(1996)는 사범기관에서 사용되는 위험성 평가에는 세 가지 세대(three generations)에 걸친 도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1세대 위험성 평가는 비공식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에 의한 전통적인 주관적 임상 판단이다. 2세대 위험성 평가는 연구에 의해 타당화 된 명백한 준거로 구성된 통계에 기초한다. 주로 범죄경력 같은 정적요인으로 구성된다. The Salient Factor Score(SFS) (Hoffman, 1994)가 대표적인 2세대 평가도구이다. SFS는 인구통계학적(초범 연령, 직업, 마약 경험 여부), 범죄 관련 변수(범죄 종류, 전과 횟수, 보호관찰 기록)들로 구성되어있다. 2세대 평가는 재소자 분류에는 유용하지만 효과적인 처우계획 수립과 범죄자의 전진적 평가에는 유용하지 못하다. 3세대 위험성 평가 도구는 역동적 위험 요인(범죄적 태도나 동료)을 포함한다. 3세대 도구의 이점은 재활 서비스의 제공과 교정 기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수형자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1세대 위험성 평가도구로서 알려지는 구조화된 임상적 지침들은 정신건강적으로 문제가 될 법한 변인들을 가능한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서 정신의학자들에 의해 애용된다. 이런 종류의 평가는 정신건강, 법정, 그리

고 교정 인구 층의 다양한 유형들의 위험성 평가를 구성할 때 취합된 요인들에 대해 과거 20년에 걸쳐 연구되었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허나 임상적 평가는 보통 평가자의 직관 혹은 폭력과 관계되어 있는 요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특성들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그러한 접근은 보통 과거 케이스에 대한 피조사자의 기억에 의존한다. 그러나 임상적 판단들의 재범예측력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매우 불충분하다. 이는 임상가들 사이의 낮은 일치성, 타당하지 않은 예측 인자들의 사용(폭력 재범에 관한 몇 개의 성격 특성들은 사실상 관계가 없는 예측인자들에 바탕을 두었거나 역으로 관계된다), 과도한 보수주의, 그리고 매우 낮은 정확성에서 유래된다. 또한 법정임상가들의 경험과 훈련, 자신감은 그들의 재범예측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인다.

통계적 예측인자는 임상적인 방법과는 대조적이다. 통계적인 도구들은 폭력 범죄의 재범 예측인자를 포함한 모든 범위에서 예측력에 있어 매우 높은 신뢰성이 있고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다. 결론적으로 학계는 최근 이들 위험성 평가도구들 중 1세대 도구들의 활용을 가능한 지양하기를 권고한다. 이는 재범예측의 부정확성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2세대 위험성 평가도구와 3세대 위험성 평가도구들이 재범을 보다 정확히 예측한다고 알려진다(Bonta et al., 1998; Grove, Zald, Lebow, Snitz, & Nelson 1995; Hanson & Bussier, 1998; Mossman, 1994).

3.2. 성범죄에 대한 통계적 위험성 평가도구들

지난 10년 동안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된 성범죄 위험성평가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 VRAG (Violent Risk Appraisal Guide): *Quinsey, Harris, Rice, Cormier,*

1998

- SORAG (Sex Offender Risk Appraisal Guide): *Quinsey, Harris, Rice, Cormier, 1998*
-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CL-R): *Hare, 1991 & 2002*
- RRASOR (Rapid Risk Assessment for Sex Offence Recidivism): *Hanson, 1997*
- STATIC-99/STATIC-2002: *Hanson & Thornton, 1999 and 2002*
- Sex Offender Needs Assessment Rating (SONAR): *Hanson & Harris, 2000*
- Minnesota Sex Offender Screening Tool-Revised (MnSORT-R): *Epperson, Kaul, & Hasselton, 1998*
- Multifactorial Assessment of Sex Offender Risk for Recidivism: *Barbaree et al., 2001*
- Sexual Violence Risk-20: *Boer et al., 1997*
- Statistics Information on Recidivism (SIR): *Bonta et al., 1996*
- Sexual Predator Risk Assessment Screening Instrument: *English & Retzlaff, 1999*
- California Actuarial Risk Assessment Tables: *Schiller & Marques, 1999*
- Registrant Risk Assessment(RRAS): *Witt et al., 1996*

<표 4> 성범죄자들에게 사용되는 주요 위험성 평가 도구

척도	항목수	항목의 유형	예측된 재범 유형	예측 정확성	재검증 정확성
VRAG	12	PCL-R, 연령, 부모와의 분리, 알코올문제, 아동기 부적응, 범죄전력, 결혼여부, 피해자 상해 정도, 조건부 석방의 실패 여부	폭력범죄 일반범죄	높음	높음
SORAG	14	VRAG와 유사한 항목으로 구성, 음경측정 평가	폭력범죄 성범죄	높음 중간	낮음

PCL-R	20	Shallow affect, 타인의존적인 생활방식, 범죄 전력의 다양성, 충동성, 양심의 가책(연민)의 결여, 속임수적인 성향, 입심이 좋은 성향, 천박한(superficial) 성향	일반범죄 폭력범죄	중간 중간	높음
MnSOST	21	이전의 성범죄 전력, 조건부 석방의 위반, 강제력의 사용, 피해자의 연령, 범죄자와 관련 없는 피해자 선택, 청소년기 비행, 약물남용, 직업, 치료의 중도탈락여부, 연령	성범죄	중간	중간
MnSOST-R	16	MnSOST와 유사한 항목(경험적으로 검증된 가중치 적용)	성범죄	높음	낮음
RRASOP	4	이전의 성범죄 전력, 남성 피해자의 선택, 범죄자와 관련 없는 피해자의 선택, 연령	성범죄	중간	중간
Static-99	10	RRASOR 항목 포함, 비성폭력 범죄 전력, 선고받은 총 구금일, 자신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선택, 미혼 여부, 대물범죄 전력	성범죄 폭력범죄	중간 중간	중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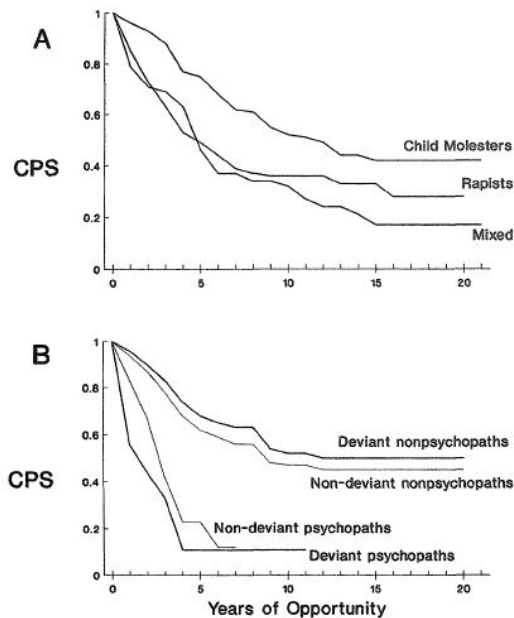
주 : VRAG(Vilolence Risk Appraisal Guide;Quinsey, Harris, Rice & Cormier, 1998), SORAG(Sex Offender Risk Appraisal Guide;Quinsey et al., 1998),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 Hare, 1991), MnSOST-R(Minnesota Sex Offender Screening Tool-Revised;Epperson, Kaul & Hesselton, 2000), MnSOST(Minnesota Sex Offender Screening Tool;Epperson, Kaul & Huot, 1995;Winick & LaFond, 2003), RRASOR(Rapid Risk Assessment for Sex Offender Recidivism; Hanson, 1997), Static-99: Hanson & Thomton, 1999)
 자료 : Winick & LaFond, 2003.

IV. 특이 성범죄 유형

4.1. 사이코패스적인 성범죄자와 소아기호 성범죄자와의 차이

보통 소아기호증을 가진 성범죄자와 사이코패스 성범죄자의 재범율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Rice와 Harris의 연구(1997)에서 이와 같은 재범율을 증명하기 위해 288명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10년 동안 폭력범죄와 성폭력 범죄의 재범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폭력범죄 재범 생존분석 결과를 보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소아기호증 성범죄자는 폭력범죄에 있어서 가장 재범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아기호증과 강간이 혼합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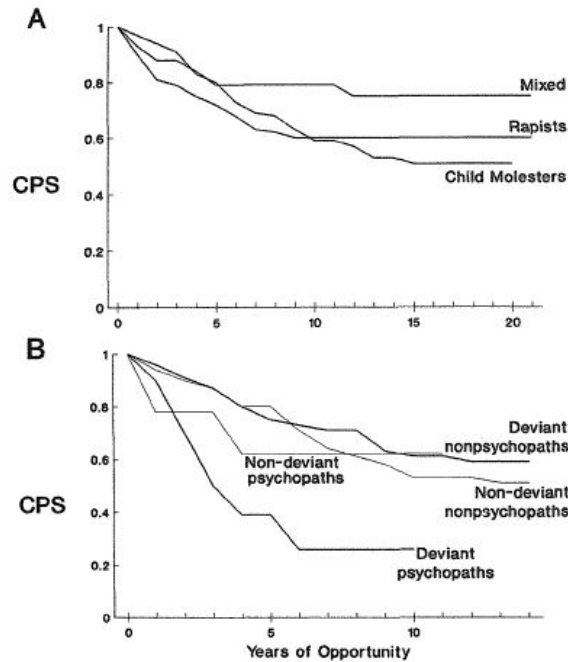
성범죄자는 폭력범죄의 재범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근 측정기로 성적일탈을 측정하고 이를 다시 싸이코패스와 싸이코패스가 아닌 범죄자로 나눈 후 폭력범죄의 생존분석을 한 결과, 성적일탈이 있는 싸이코패스가 폭력범죄의 재범율이 가장 높았다. 성적일탈보다는 싸이코패스 성향이 폭력범죄의 재범율을 좀 더 예측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료: Rice와 Harris(1997)에서 인용함.

<그림 1> 폭력범죄 재범의 10년 생존분석

또 성범죄의 재범율을 생존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2>과 같은데 소아기호증 성범죄자의 재범율이 가장 높았으며 혼합된 성범죄자의 재범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역시 성적일탈이 있는 싸이코패스의 성범죄 재범율이 가장 높았다. 성범죄의 재범을 잘 예측해주는 위험 인자로 소아기호증 여부와 싸이코패스 여부가 가장 예측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Rice와 Harris(1997)에서 인용함.

<그림 2> 성폭력범죄 재범의 10년 생존분석

4.2. 청소년 성범죄자

청소년기의 성적일탈 및 비행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성적인 범죄를 예측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그 동안의 연구에서 나타난 위험요인들을 통해 성적일탈의 발달적 측면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의 연구에서 나타난 위험요인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해를 끼치는 남성성으로 이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남성성과 강간통념 등과 같은 것들이며(Check, 1985; Burt, 1980) 둘째는 적대적인 남성성으로 남성들 사이의 적대적인 성적 경쟁과 부정적인 남성적 태도(예컨대, 나는 무엇이든 통제 가능한 남성이다)이다(Rowe, Vazsonyi, Figueredo, 1997). 또 셋째

는 심리사회적인 결핍으로 불안과 우울, 사회적 문제, 사회적 철회, 낮은 자존감 등이며(Achenbach, 1994; Lawson, Marshall, McGrath, 1979) 마지막 넷째는 비성적 공격성과 비행으로 과거 물리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했는지와 반사회적 행동을 했는지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처음 성적 비행을 시작한 나이가 어릴수록, 치료를 받은 시간이 짧을수록, 충동성이 있을수록, 피해자가 어릴수록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도 한다(Miner, 2007).

청소년 성범죄자와 성인 성범죄자의 범행특성 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16명의 청소년성범죄자와 19명의 성인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Miranda와 Corcoran의 연구(2000)에서 청소년성범죄자는 성인성범죄자에 비해 좀 더 온라인상의 성적 일탈을 더 많이 하며 좀 더 잘 알고 친한 사이에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또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 좀 더 힘을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성인은 청소년에 비해 직접적인 성교, 항문성교, 성적 삽입 등의 행위를 더욱 많이 한다고 한다. 하지만 성기 노출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다고 한다.

4.3. 연쇄성범죄자의 특성

연쇄성범죄란 동일한 범죄자가 일정한 기간에 적어도 두 명 이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Groth, Burgess, Holmstorm은 133명의 강간범죄자와 92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978)에서 강간범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폭력, 분노, 성욕이라고 결론지었다. 강간은 폭력 또는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선호되는 수단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표 4>와 같이 강간범죄자를 폭력-지향형, 폭력-강화형, 분노-보복형, 분노-성적 흥분형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5> 강간범의 동기에 따른 유형구분

강간범의 유형	범죄의 동기
폭력-지향형	강간을 남성다움, 주인의식, 지배력의 표현이라고 인식함
폭력-강화형	강간을 자신의 성적 수단과 남성다움에 대한 의심을 푸는 수단으로 인식함
분노-보복형	강간을 여성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의 표현수단으로 인식함
분노-성적흥분형	피해여성의 고통을 보면서 행복, 스틸, 만족감을 느낌

자료: Petherick(2006)에서 인용함.

강간범죄자의 75%는 폭력과 관계가 있으며 25%는 분노와 관련이 있다고 했으며 실제 강간범죄자들은 자신이 분노-보복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많았고, 피해자들은 폭력-지향형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보복적인 감정이 강간범죄자에게는 가장 공통적인 요소이며 특히 연쇄적인 경우, 피해자가 저항할수록 공격시간을 증가하고 나아가 성적 흥분을 더 느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4. 소아기호증 성범죄자

소아기호증을 가진 성범죄자들은 일반적 성범죄자와 피해자의 선택, 유인, 폭력의 성향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상황적 범죄자와 아동선호적 범죄자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4.1 소아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진단⁵⁾

DSM-IV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 소아기호증은 사춘기 이전의 소아나 소아

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Fourth Edition 의 진단 기준과 Ryan C.W.Hall, MD, and Richard C.W.Hall, MD, PA(2007), A Profile of Pedophilia: Definition,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Recidivism, Treatment Outcomes, and Forensic Issues 457-460 참고.

들(보통 13세 이하)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소아기호증은 세분화 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어떤 개인들은 남아를 선호하고, 어떤 개인들은 여아를 선호하며, 혹은 남아, 여아 모두에게 매력을 느낄 수도 있다. 나이는 적어도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아 아동과는 적어도 5세 연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소아 기호증이 있는 개인들은 소아에게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경우(폐쇄적 유형)와 때로 어른에게도 매력을 느끼는 경우(비폐쇄적 유형)가 있다. Abel과 Harlow(2001)의 연구에서 2429명의 남성 소아기호증 피험자들 중 단 7%만이 소아에게만 현저하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폐쇄적 유형의 소아기호증을 보였다.⁶⁾

세 번째로는 가족(친족)에게만 국한되는지에 대한 유형이다. 어떤 개인들은 성행위가 자신들의 친자식, 의붓자식, 친지에 국한되기도 하고 또는 타인의 자녀를 괴롭히기도 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소아기호증은 포르노그래피나 컴퓨터를 통해 자신들의 성 행위에 소아를 연루시키는 유형으로 컴퓨터에 올라온 아동 포르노를 보고 마스터베이션을 하거나 아동과 채팅을 통해 성욕을 만족시키기도 하며 심지어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소아기호증을 가진 사람과 접촉하여 스와핑을 즐기기도 한다.

엄밀한 의미의 소아기호증(Pedophiles)이란 성인 보다는 소아에게서 분명한 성적 선호를 보인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아동인 성 범죄자(Non-pedophilic Child molesters)와 구별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이 피해자인 성 범죄를 저지를 가해자에게 소아기호증이라고 명명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6) Abel G. G, Harlow N(2001). The Abel and Garlow child molestation prevention study.

한편 성격과 소아기호증과의 상관에 관심을 끄는 연구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소아기호증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열등감을 경험하고 고립되어 있으며 낮은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들의 성격적 특징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수동-공격적인 측면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써 <표 6>에서 굵은체로 적힌 유형은 Mill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MCMI) 성격검사에서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소아기호증 집단에게서 유의미하게 보인 흔한 성격 장애이다.

<표 6> 성격장애의 적용⁷⁾

A군	B군	C군
편집성(Paranoid) 타인에게 불신과 의심	반사회성(Antisocial) 타인의 권리 무시, 침범	회피성(Avoidant) 사회활동의 억제,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과민성
분열성(Schizoid)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 정서 표현 제한	경계성(Borderline) 대인관계, 자아상 등이 불안정하며 심하게 충동적	의존성(Dependent) 순종적이고 의존적 행동
분열형(Schizotypal) 인지 또는 지각의 왜곡, 괴이한 행동	히스테리성(Histrionic) 과도하게 감정적이고 관심을 끌려함	강박성(Obsessive-compulsive) 정리정돈, 완벽성, 그리고 통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
	자기에성(Narcissistic) 자신에 대한 과대 평가	

4.4.2. 소아기호증의 원인

무엇이 소아로 하여금 성적매력을 일으켜 소아기호증을 유발시키는지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신경심리학적 차이에 의

7) Ryan C. W. Hall, M. D, and Richard C. W. Hall, MD, PA(2007), A Profile of Pedophilia: Definition,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Recidivism, Treatment Outcoms, and Forensic Issues 462p.

한 접근으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몇몇 연구에서는 측두엽은 성적 식별과 각성의 역치를 관장한다고 나타내는데 이곳이 손상되면 그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과도한 성적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Cantor(2007)등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소아기호증으로 판단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전체 뇌를 MRIs를 통해 확인한 결과 소아기호증과 백질의 부피는 부적 상관을 이루고 있다는 결과를 밝혔다.

환경적인 또는 사회적 요인 또한 소아기호증의 소인이 될 수 있다는 접근이 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성적 학대를 받고 성인이 되어서는 다른 아동을 대상으로 성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바로 그 예이다.

4.4.3 소아기호증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

그동안 소아기호증을 탐지할 수 있는 도구로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자극제로 사용하여 제시함으로써 남성 성기의 혈류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적 변동 기록계(plethysmograph)를 사용은 비용이 많이 들며, 여성에게는 유용하지 못하고 의학적으로 남성의 성기가 기능을 해야 측정이 가능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새로운 검사 절차로 알려진 Abel Assessment for Sexual Interest(AASI)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와 컴퓨터를 사용한 시각 반응 시간(성인과 아동에 대한)을 측정한다. AASI의 장점은 포르노그래픽의 사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컴퓨터 이외에는 다른 장비가 필요 없고 장소의 제약 또한 거의 없는 점 등이 있어 최근 주목을 받는 검사 도구이다. 이외에도 Abel and Becker cognitions scale은 아동 대상 범행에서 인지적 왜곡을 측정하는 29문항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4.4.4 소아기호증 성범죄자의 유형

(1) 상황적 성범죄자

상황적 범죄자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성적 관심은 없지만 만약 자신의 삶에 어떠한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하면 아이들을 자신의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자는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도 성폭력을 행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성범죄자는 다시 퇴행적 성범죄자, 난잡한 성범죄자, 미성숙한 성범죄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퇴행적 성범죄자

퇴행적 성범죄자는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성적인 만족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도록 하는 외부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성인섹스파트너의 대체물로써 아이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가하게 된다. 스트레스가 되는 외부의 상황은 성범죄자로 하여금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고 이러한 요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즉 스트레스 발생 시 아이들과 있는 것을 더욱 편하게 느끼게 된다고 한다. 퇴행적 성범죄자는 대부분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인 경우가 많고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 난잡한 성범죄자

난잡한 성범죄자는 특별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적 호기심을 가지기 보다는 몰색하다보니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라고 한다.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자는 성적인 실험을 하려는 기본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성도착 행위들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심각한 성적 학대들은 이러한 난잡한 성범죄자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3) 미숙한 성범죄자

미숙한 성범죄자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통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지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자는 아이들에게 폭력 즉 구상성교나 항문성교는 하지 않지만 애무나 키스, 핥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Haas & Haas, 1990). 아이들은 성인들보다 범죄자 자신에 대해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인들과의 관계와는 다른 통제적인 느낌을 가진다고 한다.

(2) 아동선호형 성범죄자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자들은 아이들을 개인적인 성적 만족의 제공자로 선호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들은 가학적 성범죄자와 고착형 성범죄자로 나뉜다.

1) 가학적 성범죄자

이 유형은 성적인 만족과 폭력성을 연관시키는 유형으로 피해자인 아동을 신체적으로 해할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이들은 보통 낮은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스토킹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한다고 한다. 이들은 놀이터, 학교, 쇼핑몰과 같이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유인의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힘과 폭력을 사용하여 아이들을 유괴하여 범죄를 저지른다. 이들은 아이들에 대해 오직 우월감을 느끼고 폭력을 행사하여 자기만족을 느낀 후 살해하는 단계를 밟는다고 한다. 이들의 범죄는 계획적이다.

2) 고착형 성범죄자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자는 심리성적의 발달 초기단계에 고착되어 있다고

한다(Burgess, Groth, & Holmstorm, 1978). 이러한 성범죄자의 소아기호는 보통 청소년기에 시작된다고 한다. 퇴행적 성범죄자와 달리 고착형 성범죄자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아이들을 선호하기 보다는 지속적이고 강박적인 소아기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성범죄자들은 대인관계가 거의 없으며 주변에서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아동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이들은 덜 요구적이며 쉽게 지배할 수 있고 어른들보다 범죄자의 행동에 덜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동을 유인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선물 등을 사주며 유인하며 천천히 아동과 친해진다. 이들은 보통 구강성교를 하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는 실제 성교를 시도한다고 한다(Holmes & Holmes, 2001).

<표 7> 소아기호증 성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

구분	미성숙	퇴행적	가학적	고착형
폭력행위 수반	X	X	O	X
공격성향	X	X	O	X
반사회적 성향	X	X	O	X
소아성행위 선호	X	O	O	O
아는 아동	O	O	X	O
성교	X	O	O	X

자료: Holmes & Holmes(2001)에서 인용함.

V. 성범죄자에 대한 시설내 프로그램: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많은 주정부 교정시설에서는 성범죄자가 가석방되기 전에 감옥 내 전문 성범죄 치료(specialized sex offender treatment)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

을 요구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가를 유도하기도 한다. 알래스카 주에서는 법원 명령을 통해 의무적으로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한다. 다른 주에서는 의무적 조건이 아니라, 가석방 조건이나 치료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이 인센티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 치료 프로그램의 참가 여부는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된다. 어떤 주에서는 교도소 내 치료와 지역사회 감시의 일부로서 출소 후 갱생치료(aftercare) 모두를 제공한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몇몇 주들은 교도소 내의 치료는 없으며 가석방 기간 동안 출소 후 전문 갱생 치료만을 제공한다.

미국의 34개 교도소에서 공식적인 전문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West, Hromas, Wenger, & Suthers, 2000). 7개 주에서는 전문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이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 콜로라도, 하와이, 켄터키, 미주리,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나머지 주들은 행정 절차의 하나로 관리된다. 치료 프로그램의 기간은 주마다 다양한데, 가장 짧게는 180시간의 프로그램에서 6년 이상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2-3년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2년의 치료 프로그램이 수행된다. 표 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수용 가능 인원은 교도소 내 성범죄자의 인원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치료 직원의 수가 가장 많은 주는 미시간(86명), 텍사스(65명), 그리고 매사추세츠(54명) 순이다. 21개주에서는 치료 직원들의 면허증이나 증명서가 요구되고, 단지 3개주에서만 석사이상의 학위를 요구한다. 5개주에서 성범죄자 전문훈련만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10명당 한명의 비율로 상담전문가나 심리전문가를 둔다.

<표 6> 미국 34개주 교도소 내 공식 전문 성범죄 치료 대상자 현황

주	프로그램의 기간	교도소 내 성범죄자 수(명)	교도소범죄자중의 성범죄자 비율(%)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수용가능 인원(명)
알래스카	20-36 개월	496	24	150
애리조나	3-5 년	3299	13	274
아칸서스	1년	1653	15	150
콜로라도	2년 이상	3391	22	230
코네티컷	6개월	2295	13	325
조지아	9개월	4839	11	120
하와이	1-3년	634	18	110
일리노이즈	12-18개월	6496	14	150
인디애나	180시간	2701	14	모든 인원이 모니터링
아이오와	2년-2년6개월	1228	17	180
캔자스	18개월	2002	23	316
켄터키	적어도 2년	2000	14	325
매사추세츠	6년 이상	2796	26	690
미시간	1년	9756	21	1100
미네소타	18-36개월	1164	20	300+
미주리	12-15개월	3500	14	275
몬테나	3년 이상	465	33	150
뉴햄프셔	12-16개월	633	27	120
뉴저지	3-4년	2052	7	800+
뉴욕	6개월	6272	8	530
노스캐롤라이나	5개월	5101	16	75
노스다코타	2-5년	161	17	60
오하이오	3년까지	9100	19	525
오클라호마	3년 이상	2200	10	160
펜실베이니아	18-24개월	6931	19	1200
로드아일랜드	6개월	405	13	100
사우스캐롤라이나	1-2년	2300	10	100
사우스다코타	2년까지	550	22	100
테네시	3-4년	3036	18	105
텍사스	12-18개월	25398	17	307
버몬트	1-3년	362	29	70
버지니아	2년 이상	5400	18	300
워싱턴	3년까지	3117	22	200
위스콘신	3년까지	4000	19	300
총	평균 24개월	연간 119,468명	평균 17.4%	평균 300명

[자료: West, et al., (2000), 미국 50개 주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조사, 재구성]

치료 프로그램을 완수하는 비율은 평균 59%이다. 완료 비율의 범위는 5%(매사추세츠)에서 95%(워싱턴)이다. 버몬트와 뉴햄프셔는 90%이다. 9개 주에서 출소 후 갱생치료는 지역사회 거주 센터에서 한다. 25개주에서는 갱생치료는 가석방기간에 한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성범죄자 치료자의 주 범위 네트워크가 있어서 가석방자, 보호관찰 대상자, 그리고 교도소 출소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저지 성인 진단 및 치료 센터(Adult Diagnostic and Treatment Center)에서는 평생 감시 감독 하에 있는 사람들, 강제적 민간위탁 치료 프로그램에서 풀려난 사람들, 법률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치료에 참가하는 출소자들에게 매주 마다 갱생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도소의 전문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은 교육, 지각적-행동적 관리법, 그리고 출소 후 치료/감시/감독 하의 위험성 평가 등을 결합하여 재범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 접근방식을 찾는다. 전통적으로 전문 성범죄자 치료는 세 가지 접근방식을 취한다.

- 인지 행동적 접근: 이 접근방식은 성범죄와 관련된 사고패턴의 변화와 흥분의 비정상적 패턴의 변화를 강조한다. 대부분의 치료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와 치료 전략은 이 접근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 심리교육적 접근: 이 접근방식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자의 관심(배려)의 증가와 그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감의 재인식을 강조한다.
- 약물치료 접근⁸⁾: 이 접근방식은 성적 흥분을 감소시키기 위한 약물 사용을

8)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MPA(Medroxy Progesterone Acetate)처분이 바로 이와 같은 성범죄자들에게 대한 약물치료처분이다. MPA처분은 프로게스테론계의 약물이나 세로토닌계의 약물을 보호관찰과 함께 집행하는 것이다. 프로게스테론계의 약물이나 세로토닌계의 약물은 현재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부작용으로 인하여 남성들이 이 약물들을 먹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체중 증가, 피로감, 두통, 우울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inick & LaFond, 2003). 그러나 재범을 억제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인데, 약물치료와 함께 심리치료를 받은 집단의 재범율은 심리치료만 받은 집단의 재범율의 18% 밖에 안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고 비정상적인 성적 환상 또한 현저하게 줄었다고 보고되고 있다(Winick & LaFond, 2003). 따라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약물치료명령 관련 법안을 보면 캘리포니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제한 없이 모두 치료를 집행하고 있으며 몬타나는 교도소에서 주로 치료를 집행하고 치료비용은 교정국이

기본으로 한다. 테스토스테론을 줄이는 Depo-Provera와 같은 Anti-androgens의 사용은 성적 흥분을 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항우울제 또한 유용하다. 약물 치료는 폭력적이며 흉악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전의 치료가 실패했을 때, 비정상적 성적 욕구를 통제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치료 접근 방식을 통합하여 교도소 내 기관 프로그램은 7개의 요소로 구성되는데, 각 주마다 이 7개의 구성요소를 모두 채택하거나 선택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한다(<표 7> 참조).

- 치료를 위한 평가: 다양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참가자의 태도, 사고 패턴, 행동 등을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준다.
- 치료 준비/안내: 인지-행동적 치료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치료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하며, 제공되는 클래스의 개략적 소개를 한다.
- 교육/심리교육: “교육” 또는 “심리교육”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 단계에서는 성적 범죄 행위로 이끄는 인지 왜곡, 행동 패턴, 개인적 기록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이다.
- 인지-행동 집단 치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단계로서 심리교육 단계에서 습득한 지식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단계이다. 재범 방지를 위해 자신의 사고나 행동을 인지하고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집중치료: 이 단계는 자신이 습득한 지식의 적용을 더욱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 지역사회로의 이행 준비: 지역사회로 석방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정보를 습득하고,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지지와 후원을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 석방 후 갱생치료: 석방 후 지속적으로 치료에 참가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담당한다. 또한 치료기간 중에 치료를 거부하면 가석방 없이 10년 이상 구금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에게는 치료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 플로리다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추행, 유사강간 등을 모두 포함한 성범죄자들을 전부 치료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사전에 치료기간을 명시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치료는 법원이 치료전문가 집단을 선정하고 이들 전문가 집단이 교도소를 방문하여 치료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판결 60일 전부터 MPA치료가 적합한지 사전 선별하고 MPA치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면 모두 구금시키고 있다. 환자가 약물치료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자의 권한으로 치료의 중단이 가능하고 성범죄자는 비용의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 MPA치료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표 7> 전문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구성요소 현황

주	평가 도구 수	치료안내	심리치료(P)/교육(E)	인지행동	집중집단 치료	지역사회 이행준비	석방 후 치료
알래스카	5	유	E	유	유	유	유
애리조나	4	유	P	유	유	유	유
아칸서스	1	유	P	유	유	유	무
콜로라도	14	유	P	유	유	유	유
코네티컷	5	유	E	유	무	무	유
조지아	1	무	P	유	무	무	유
하와이	1	무	미확인	유	무	유	유
일리노이즈	7	유	무	유	무	유	유
인디애나	6	유	E/P	무	유	무	유
아이오와	3	유	E	유	무	유	유
캔자스	4	유	P	유	유	유	유
켄터키	5	유	E/P	유	무	무	유
매사추세츠	12	유	P	유	유	유	유
미시간	5	무	P	유	무	무	유
미네소타	3	유	P	유	유	유	유
미주리	3	유	P	유	무	무	유
몬테나	3	무	E	유	유	무	유
뉴햄프셔	1	무	E	유	유	무	유
뉴저지	8	유	E/P	유	유	유	유
뉴욕	3	유	무	유	무	무	유
노스캐롤라이나	5	무	P	유	유	무	무
노스다코타	6	유	E	유	유	유	유
오하이오	4	무	P	유	유	무	유
오클라호마	9	유	E	유	유	유	유
펜실베이니아	4	유	P	유	유	유	유
로드아일랜드	미확인	유	P	유	무	유	유
사우스캐롤라이나	7	무	E	유	유	무	무
사우스다코타	4	무	P	유	무	무	무
테네시	8	무	P	유	유	유	유
텍사스	5	유	P	유	유	유	유
버몬트	6	무	P	유	유	유	유
버지니아	8	무	P	유	유	무	무
워싱턴	3	유	E/P	유	무	무	유
위스콘신	1	유	P	유	유	무	유

[자료: West, et al., (2000), 미국 50개 주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조사, 재구성]

전문 성범죄자 치료와 관리는 전통적 정신 건강 상담과 심리치료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전문 성범죄자 치료는 지역사회 보호, 다른 전문가와 형사 사법 요원들과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가 당한 상처를 인지하고 공감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서는 12단계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프로그램,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즉 비정상적 행동의 통제와 변화, 내적 대처 매카니즘의 개발, 피해자를 인지하기, 범죄에 대한 책임감 갖기는 치료의 핵심이다.

텍사스에서는 성범죄자 치료 위원회(CSOT)가 주 교도소와 지방 커뮤니티의 전문 성범죄 치료의 모든 기준을 정하고 성범죄자 치료 제공자의 등록을 관리한다. 주 교도소에 있는 중죄의 성범죄자는 최대 24개월이 걸리는 3단계 치료 프로그램을 완료한 후에만 지역사회 치료를 받는 가석방 자격을 가지게 된다. 이 프로그램을 받는 대상자들은 가석방 규칙을 위반하여 다시 교도소에 온 성폭력 흉악범, 격리 수용되지 않은 이전 성범죄로 인한 재소자와 성범죄로 판결 받은 재소자들을 포함한다. 텍사스의 치료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왜곡된 사고와 행동 패턴을 수정하는 재범 방지 인지-행동 모델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비정상적 사고와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잠재적 위험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통적인 재범 방지 인지-행동 모델과 같이 1단계(3-6개월)에 프로그램의 소개와 참가자들에 대한 평가와 심리교육을 통해 죄책감의 시인, 책임감의 수용, 성범죄의 이해, 비정상적 사고의 확인, 그리고 적절한 대처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범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훈련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2단계(9-12개월)는 집중 치료단계로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비정상적 행동과 사고의 패턴의 재구성을 시도하고 자신이 습득한 대처 기술을 발전시키고 일반화시키는 단계이다. 마지막 3단계(3-6개월)는 지역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재범 방지를 위해 이때까지 훈련한 대처기술을 익히고 집중적 집단치료를 지속한다. 특히 이 단계에서 가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가족들의

지지는 재범 방지와 석방 후 정착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가족들⁹⁾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 치료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조기 석방된 성범죄자는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전문 치료를 받을 의무가 있다. 위험성 평가팀은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 받을 치료의 수준과 감독의 강도를 결정한다. 텍사스의 치료 프로그램의 직원은 65명으로 이 중 심리학자는 22명이며 모두 주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다.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이나 관련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이 요구되고, 대부분은 주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석사학위를 마친 후 면허 취득을 위한 훈련을 받는 심리학자들도 고용된다.

텍사스의 교도소 내 치료프로그램은 매우 전문적이며 강도 높게 시행된다. 이는 치료프로그램을 완료는 가석방 심사의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며, 다른 주와 달리 소수의 흉악한 성범죄자도 출소 후에 민간위탁 감금시설에 수용되는 대신 바로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워싱턴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은 1986년 정신병원에서 교도소로 이관되었다. 워싱턴 교정국은 인지-행동 모델과 사회 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한 집단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기준에 맞는 치료 적격자들을 3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두 수준의 집단치료를 제공한다. 참가 대상자들은 성범죄로 유죄판결 받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받은 범죄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자들은 기꺼이 치료를 받을 의도가 있는 자발적 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워싱턴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구조화된 프로그램

9) 가족 교육에 초대될 수 있는 가족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후원자 조직에서 초대될 경우에는 18세 이상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10) 텍사스 주에서는 거짓말탐지검사가 성범죄자 감독의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Wilcox et al., 2000). 특히 성범죄자들의 피해자를 유인하는 행동, 충동적인 자위행위, 음란장소에서의 출입 등을 검사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낸 범죄관련 행동은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범죄에 영향을 주는 역동적 요인들이며 이와 같은 검사는 이들 재범 유발 요인들을 통제함에 효과적이다. 텍사스 주에서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거짓말탐지검사 이외에도 PPG(penile plethysmography), 음경측정기의 활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The State of Texas, 2006). 성범죄흉악범법(참조, 이수정, 2006)에 저촉되는 대상으로 하여서는 의무적으로 음경측정기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의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그들의 성적 일탈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경측정기를 사용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때 성범죄자들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는 텍사스주가 인정한 전문가인 정신의학자, 심리학자, 그 이외 치료자들이 담당한다.

은 아니다. 대신에 이 프로그램은 각 참가자들의 요구나 능력, 그들의 진척 정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수준 I 이나 수준 II 중 하나에 배치된다.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은 수준 I 에 우선 배치된다. 그러나 형기가 12개월 미만으로 남은 범죄자들은 수준 II로 바로 들어간다. 수준 I 은 참가자들이 그들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도록 하며 피해자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둔다. 참가자들은 일주일에 7-10시간을 치료에 참가하며 최대 6개월까지 지속된다. 수준 II에서 참가자들은 석방될 때까지 최소한 일주일에 18시간의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여야 한다. 수준 II에는 약물중독문제를 가진 범죄자들과 발달 장애 범죄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모든 참가자들은 PPG 테스트를 해야 하며, 일주일에 3번 90분간의 집단 심리치료를 받는다. 집단 심리치료에서는 개인적 또는 대인간의 문제나 대처기술, 구체적인 비정상적 성적 행동과 관련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다. 심리교육 수업은 일주일에 2시간 30분에서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심리교육은 대처 전략을 배우고 각자의 비정상적 성적 행동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다. 심리교육은 다음과 같은 수업을 포함한다: 스트레스 관리, 분노 관리, 재범 방지, 성폭력의 이해, 인간 성교육, 가족 역동성, 중독의 문제, 영성과 회복, 대인관계, 의사소통 기술. 이러한 수업들은 학점 인정이 가능한 곳에서는 대학 학점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프로그램의 직원은 모두 27명으로 상담전문가 1명당 10-12명의 참가자를 맡고 있다. 직원들은 모두 훈련이나 면허나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다.

VI. 결론 및 제언

현재 국내 교도소에서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화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일은 시험단계에 머물러 있다. 성범죄 교화프로그램은 2006년도 상반기

에 수원구치소를 시작으로 하여 안양교도소, 여주, 진주, 대전, 순천교도소, 그리고 대구, 청송, 광주, 영등포, 부산, 목포, 천안소년교도소 등에서 소규모로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교화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시민단체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시행이 되거나 심리학과 교수 등 민간전문가들을 한시적으로 유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 교화프로그램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범죄수형자들의 자발성에 의존해 있다. 이러한 국내 실정은 전문적인 성범죄자 교화프로그램을 지속적이고 심도있게 시행하기에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미국의 교정시설 내 전문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과 민간위탁 프로그램의 실태 조사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법적 절차와 구체적 치료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미국의 성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일차적 목표는 공공의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위험군인 상습적 성범죄자를 교정시설 수용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석방 후 민간위탁의 형태로 구금의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고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성폭력 누범자들에 대하여서는 시설수용의 기간을 현저하게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죄질의 만성화가 곧 재범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미 유죄를 서너 번 받은 성범죄자들의 경우 지역 사회 내에 대단히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추세대로 일단은 누범자에 대한 형기를 늘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성폭력 위험군에 대한 사회내 처우 등에 관한 논의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시기상조인 느낌이 있다. 그보다는 일단은 시설수용의 기간을 보다 길게 하여 사회로부터 조금 더 오래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

성폭력 범죄자들에게는 단순한 구금이 죄질의 개선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편 목적 없이 연장된 구금은 성범죄자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닌다. 따라서 구금기간을 연장할 시 꼭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구금의 특성이 재소자들에게도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치료처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오래도록 경험적 연구를 검증된 구조화된 치료 모델들 시설 내에서나 민간위탁 기관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를 국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범 방지 인지-행동 모델은 재범억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된다. 외국의 경우 많은 수의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교정 치료프로그램의 집행이 가능한 이유는 그와 같은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명령은 물론 자발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만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제재조치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재소자들은 가석방이 되거나 전자감시 장치 부착을 종료하기 위하여 치료에 열의를 다하려 애쓰게 된다. 물론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법안을 마련하여 치료를 강제하는 방안을 택하기도 하지만 치료효과를 고려해볼 때 일방적인 강제치료는 별반 긍정적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재소자의 자발성은 치료프로그램을 완수할 가능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완수할 경우에는 재범위험성은 현저히 낮아지기에 재소자들은 자발적으로 치료에 참여하여 끝까지 열의를 다하도록 촉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범죄자의 가석방 심사절차에는 치료에의 참여 여부와 치료효과 등을 심사요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우리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고려할 때 현행 행형법으로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처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힘들며 이를 위한 시행령이 따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폭력 범죄자들의 치료처우는 성폭력 누범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거의 모든 교정시설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매우 위험도가 높은 성범죄자들을 전국에서 선별하여 일정 시설에 모두 모아놓을 경우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수용자간 성폭행, 성추행 등의 문제를 염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사전에 미리 꼭 심각하게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동성의 수용자간,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성폭력 사고가 많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외국 수용시설의 경우 동성 수용자간 성폭력이 성병이나 AIDS 감염 등의 문제로 전이되어 국가적인 대책을 모색한 사례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꼭 염려해 보아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의 발생을 고려한다면 특정 부류의 성범죄자를 따로 혼거시키는 것보다 기존의 교정시설에 치료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국 교정시설 중 성범죄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된 서너 시설들을 거점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전문가들과 치료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범죄 위험군을 선정하고 치료하여 예후를 관찰하고, 지역사회 전문인력과 공조하기 위해서는 수용 시설 내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들은 범죄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법과 교정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시설에 유입되는 시점부터 외부 전문가들이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보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종료와 출소 이후에도 자신이 담당했던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관련 예후를 추적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 방지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가장 어려운 형사정책적 과제 중 하나이다. 국내의 경우도 늦은 감이 있으나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방안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조만간 가시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http://en.wikipedia.org/wiki/Pedophilia>
-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4_01.jsp
- 경찰청 (2006). 경찰백서.
- 경찰청 홈페이지 (2007). 5대 범죄 발생, 검거 현황.
- 고선영 · 양종희 · 이수정 (2004). “성폭력 범죄의 원인과 개입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지 제10권 특집호, 117-146.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제11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계도문. 미출판물.
- 김미애 (2006).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 개입 프로그램 효과: 집단 구성방식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 519-546.
- 김엘림, 윤덕경, 박현미 (2000).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보고서.
- 김은주 (2005). 배우자살인에 관한 연구: 가정폭력 피해자의 3차피해자화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2(1), 152-180.
- 김지선, 이천현, 홍영오, 박형민, 김한균, 권수진 (2007).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0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일석 (2007). [성폭력보호관찰청소년 재범위험성 예측도구 개발 : 이중 동종을 포함한 일반 재범위험성 중심으로] ,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10
- 박광배 (2004). 가정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안: 치료적 사범이념의 관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69-86.
- 박영란 (2006). 여성인권의 시각에서 본 가정폭력 추방 정책의 현황 및 과제. 가정폭력추방 연속토론회 2차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법무부 보호국 (2006).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회의자료. 미출판물.

- 법무부(2007). 성범죄자 치료처우 방안 모색을 위한 미국의 성폭력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실태 연구.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신의진 (2006). 연세대학교 정신과학교실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개발연구, 법무부 용역 연구보고서] p. 8.-18.
- 이수정 (2004).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 국가인권위원회 『신상공개제도 및 세부정보공개제도(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 이수정 (2006). 최신범죄심리학, 북카페.
- 이수정 (2007). 국내 성범죄자 치료처우 방안모색을 위한 미국의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실태연구. 법무부 용역 연구보고서.
- 이수정, 김경옥 (2005).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9), 83-99.
- 이수정, 김경옥 (2005).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3(19), 83-99.
- 이수정, 윤옥경 (2003). 범죄위험성의 평가와 활용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99-126.
- 치료감호소, (2006). 아타스카데로 주립병원 방문보고서
- Abel, G. G., & Rouleau, J. L. (1990). The nature and extent of sexual assault. In W. L. Marshall, D. R. Laws & H. E. Barbree(Eds.), *Handbooks of sexual assault: Issues, theory and treatment of the offender(pp.9-21)*. New York : Plenum Press.
- Abel, G. G., Becker, J. V. & Cunningham-Rathner, J.(1984) Complication, consent, and cognitions in sex between children and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7, 89-103
- Abel, G. G., Blanchard, E. B., & Becker, J. V.(1878). An integrated treatment of sexual devi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0,467-475.

- Achenbach, T. M.(1994).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lated instruments. In Maruish, M. E.(ed.), *The Use of Psychological Testing for Treatment Planning and Outcome Assessment*, Erlbaum, Hillsdale, NJ, 517-549.
- Alexander, M. (1999). Sexual Offender Treatment Efficacy Revisited.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1(2).
- Alexis O. Miranda & Colette L. Corcoran(2000). Comparison of Perpetration Characteristics Between Male Juvenile and Adult Sexual Offenders: Preliminary Result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2(3), 179-188.
- Andrews, D. A., & Bonta, J. (1998).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2nd ed. Cincinnati, OH: Anderson Publishing Co.
- Austin, J. (1986). Objective prison classification systems: A review.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 Austin, J. (2003). *Findings in Prison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Prisons Division.
- Bailey, R. K. (2002). The civil commitment of sexually violent predators: A unique Texas approach. *Th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30(4), 525-532.
- Bloom, H., Webster, C., Hucker, S., & De Freitas, K. (2005). The Canadian Contribution to Violence Risk Assessment: History and Implications for Current Psychiatric Practic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0(1), 3-11.
- Bonta, J., Law, M., & Hanson, R. K. (1998). The prediction of criminal and violent recidivism among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

-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39, 127-144.
- Brennan, T. & Wells, D. (1992). The importance of inmate classification in small jails. *American Jails*. May/June, 49-52.
- Burgess, A., Groth, A., & Holmstorm, L.(1978). *Sexual assaul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Burt, M. R.(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 for rape. *J. Pers. Soc. Psychol.* 38(2), 217-230.
- Campbell, J. C. (1986). Assessment of risk of homicide for battered women.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4), 36-51.
- Campbell, J. C. (1995). Prediction of homicide of and by battered women. In J. C. Campbell(Ed.), *Assessing dangerousness: Violence by sexual offenders, batterers, and child abusers* (pp. 96-113). Thousand Oaks, CA: Sage.
- Campbell, J. C., Webster, D., Koziol-McLain, J., Block, C. R., Campbell, D. W., Curry, M. A. Gary, F., Sachs, C. J., Sharps, P. W., Ulrich, Y., Wilt, S., Manganello, J., Schollenberger, J., Xu, X., & Frye, V. (in press). Risk factors for femicide in abusive relationships: Results from a multi-site case control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 Check, J. V.(1985). The Hostility Toward Women Scale. *Diss. Abstr. Int.* 45(12B, Pt. 1), 3993.
- Clements, C. (1996). Offender classificatoin: Two decades of progres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3, 121-143.
- Council on Sex Offender Treatment(CSOT) Program 홈페이지. 텍사스,
- Craig. L. A., Browne K. D., Stringer. I. & Beech. A. (2005). Sexual recidivism: A review of static, dynamic and actuarial predictors.

-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Vol. 11, No. 1, pp. 65-84.
- Cunningham, M. D., & Sorensen, J. R. (2006). Actuarial models for assessing prison violence risk. *Assessment, 13*(3), 253-265.
- Dempster, R. J. & Hart, S. D. (2002). The Relative Utility of Fixed and Variable Risk Factors in Discriminating Sexual Recidivists and Nonrecidivist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4*(2), 121-138.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Fourth Edition.
- Edens, J. F., Petrila, J., & Buffington-Vollum, J. K. (2001). Psychopathy and the death penalty: Can th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identify offenders who represent a continuing threat to society? *Journal of Psychiatry & Law, 29*(4) 433-448.
- Farrington, D. P. (1983). Offending from 10 to 25 years of age. In K. T. Van Dusen, & S. A. Mednick (Eds.), *Prospective studies of crime and delinquency*. Boston: Kluwer-Nijhoff.
- Finkelhor, D., Ormrod R. Child pornography: patterns from NIBRS. *Juvenile Justice Bull.* December 2004.
- Gendreau, P., Little, T., & Goggin, C. (1996). A Meta-analysis of the Predictors of Adult Offender Recidivism: What Works! *Criminology, 34*(4), 575-608.
- Grove, W. M., Zald, D. H., Lebow, B. S., Snitz, B. E., & Nelson, C. (1995). Clinical vs. mechanical prediction: A meta-analysis. Unpublished manuscript.
- Grubin D, Parsons S, and Hopkins C.(1999). Report on the Evaluation of a New Perception Health Questionnaire and Associated training. Report for Her Majesty's Prison Service.

- Haas, L., & Haas, J.,(1990). Understanding sexuality. St. Louis, MO: C. V. Mosby.
- Hanson, R. K. (1997). The Development of a Brief actuarial Risk Scale for Sexual Offense Recidivism (Document No. 1997-04). Ottawa, Ontario, Canada; Solicitor General Canada.
- Hanson, R. K., & Bussier,M. T. (1998). Predicting relapse: A meta-analysis of sexual offender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348-362.
- Hanson, R., K., & Thornton,D. (2000). Improving risk assessments for sex offender: A comparison three actuarial scales. *Law and Human Behavior*, 24, 119-136.
- Hare, R. D. (1991).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 Revised. Toronto, Ontario, Canada: Multi-Health Syste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7-16.
- Hare, R. D. (1991).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 Revised*. Totonto, Ontario, Canada: Multi-Health Systems.
- Harris, A., Phenix, A. Hanson, R. K., & Thornton, D. (2003). *Static-99 Coding Rules Revised-2003*. Corrections Directorate Solicitor General Cansda.
- Health & Safety Code, Chapter 841. 텍사스 성폭력 흉악범(SVP) 법률. 텍사스.
- Hershkowitz, I., Orbach, Y., Lamb, M. E., Sternberg, K. J., & Horowitz, D. (2001). The effects of mental context reinstatement on children's accounts of sexual abuse.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5, 235-248.
- Hilton, N.Z., Harris, G.T., Rice, M.E., Lang, C., Cormier, C.A., & Lines,

- K.J. (2004). A brief actuarial assessment for the prediction of wife assault recidivism: The Ontario Domestic Assault Risk Assessment. *Psychological Assessment, 16*, 267-275.
- Hoffman, P. B. (1994). Twenty years of operational use of a risk prediction instrument: The United States Parole Commission's Salient Factor Scor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2*, 477-494.
- Hollin, C. R. (2004). [The Essential Handbook of Offender Assessment and Treatment] Ch. 3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R. Karl Hanson). Canada.
- Holmstorm, S., & Holmstorm, R. (2001). *Sex crimes*(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Howitt, D. (2002). *Forensic and Criminal Psychology*. Harlow: Pearson Education, pp. 121-158.
- Howitt, D. (2002). *Forensic and Criminal Psychology*. Pearson Education.
<http://www.dmh.cahwnet.gov/socp>
<http://www.dshs.state.tx.us/csot/default.shtm>.
- Hudson, S. M. Jones, R. s., Marshall, W. L., Wales, D. S., McDonald, E., Backer, L. W., & McLean, A.(1993). Emotional recognition skills of sex offenders. *Annals of Sex Research, 6*, 199-211.
- Kendall, W., & Cheung, M. (2004). Theoretical reviews and policy issues: Sexually violent predators and civil commitment laws.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3*(2), 41-57.
- Kersting, K. (2003). New hope for sex offender treatment. *Monitor on Psychology, 34*(7), 5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ropp, P.R., Hart, S.D., Webster, C. D., & Eaves, D. (2000). The Spousal Assault Risk Assessment Guide (SARA) guide: Reliability and

- validity in adult male offenders. *Law and Human Behaviour*, 24 (1), 101-118.
- LaFond, J. Q. (2004). *Preventing Sexual Violence: How society should cope with sex offend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ane Council of Governments. (2003). *Managing sex Offender in the community: A national overview*. Oregon.
- Langan, P. A., Schmitt, E. L., & Durose, M. R. (2003). *Recidivism of sex offenders released from prison in 1994*.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U. S. Department of Justice.
- Lawson, J. S., Marshall, W. L., and McGrath, P. (1979). The Social Self-Esteem Inventory. *Educ. Psychol. Meas.* 39(4), 803-811.
- Levy. G., Kemshall. H., & Mcivor. G. (2002). Serious Violent and Sexual Offenders: The Use of Risk Assessment Tools in Scotland. The Scottish Government Reasearch, November 08. <http://www.scotland.gov.uk/Publications/2002/11/15734/12664>
- Lieb, R. (2003). State policy perspectives on sexual predator laws. ed. B. J. Winick and J. Q. Lafond (eds.) *Protecting Society from Sexually Dangerous Predator Law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owenkamp, C. T., Holsinger, A. M., & Latessa, E. J. (2001). Risk/need assessment, offender classification, and the role of childhood abus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8(5), 543-563.
- Loza, W., Dahliwal, G., Kroner, D. G., Loza-Fanous, A. (2000). Reliability, construct, and concurrent validities of the self-appraisal questionnaire: A tool for assessing violent and nonviolent

- recidivism.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7, 356-374.
- Marnie, E. Rice and Grant, T. Harris.(1997). Cross-Validation and Extension of the Violent Risk Appraisal Guide for Child Molester and Papists. *Law and Human Behavior*, 21(2), 231-241.
- Megargee, E. (1994). Using the Megargee MMPI-based classification with the MMPI-2's of male prison inmates. *Psychological Assessment*, 6, 337-344.
- Miller, H. A., Amenta, A. E., & Conroy, M. A. (2005). Sexually violent predator evaluations: Empirical evidence, strategies for professionals, and research directions. *Law and Human Behavior*, 29(1), 29-54.
- Milloy, C. (2003). *Six-year follow-up of released sex offenders recommended for commitment under Washington's sexually violent predator law, where no petition was filed*.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 Mills, J. F., Kroner, D. G., & Hemmati, T. (2003). Predicting violent behavior through a static-stable variable len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8), 891-904.
- Miner, M. H. (2002). Factors Associated with Recidivism in Juveniles: An Analysis of Serious Juvenile Sex Offende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9(4), 421-436.
- Monahan, J. (1981). *The clinical prediction of violent behavior*. Rockville, MD: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Mossman, D. (1994). Assessing predictors of violence: Being accurate about accur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783-792.

- Murphy, M.C., Morrell, M.T., Elliott, D.J., & Neavans, M.N. (2003). A prognostic Indicator Scale for the treatment of partner abuse perpetrat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 (9), 1087-105.
- National Center for Prosecution of Child Abuse. (2005). *Civil commitment of sexually violent predators*
- Nieto, M. (2004). *Community treatment and supervision of sex offender: How it's done across the country and in California*. California Research Bureau: California State Library.
- Petherick, W. A. (2006). *Serial cri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in behavioral profiling*, California: Elsevier.
- Pfaffenroth, P. C. (2003). The Need for Coherence: States Civil Commitment of Sex Offenders in the Wake of *Kansas v. Crane*, *Stanford Law Review, 55*, 2229-2266.
- Quay, H. (1984). *Managing adult Inmates: Classification for Housing and Program Assignments*. College Park, MD: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 Quinsey, V. L., Rice, M. E., & Harris, G. T., Cormier, C. A. (1998). *Violent Offenders Appraising And Managing Risk*,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evised Code of Washington (RCW). 워싱턴 성폭력 흉악범(SVP) 법률
- Riedel, M. & Welsh, W. (2002). *Criminal Violence: Patterns, causes, and prevention*. Los Angeles: Roxbury Publishing Company. pp. 207-235.
- Rowe, D. C., Vazsonyi, A. T., & Figueredo, A. J. (1997). Mating-effort in adolescence: A conditional or alternative strategy. *Pers. Individ. Differ. 23*(1), 105-115.

Ryan, C.W., Hall, M. D., & Richard C.W., Hall, M. D., PA(2007), A Profile of Pedophilia: Definition,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Recidivism, Treatment Outcomes, and Forensic Issues.

Sex Offender Commitment Program(SOCP) 홈페이지. 캘리포니아,

Silver, E., & Chow-Martin, L. (2002). A multiple models approach to assessing recidivism risk.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9(5), 538-568.

Simourd, D. J. (1997). The criminal sentiments scale-modified and pride in delinquency scal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4, 52-70.

Simourd, D. J. (2004). Use of dynamic risk/need assessment instruments among long-term incarcerated offenders. *Criminal justice behavior*, 31(3), 306-323.

Simourd, D. J., & Andrews, D. A. (1994). Correlates of delinquency: A look at gender differences. *Forum on Corrections Research*, 6(1), 26-31.

Special Commitment Center(SCC) 홈페이지. 워싱턴,
<http://www1.dshs.wa.gov/hrsa/scc/>

Steffensmeier, D., & Demuth, S. (2000). Ethnicity and sentencing outcomes in U.S. federal courts: Who is punished more harshl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 705-729.

Strassberg, D. S., & Reynolds, S. A. (2005). A recidivism risk measure as a predictor of sex offender treatment completion. *Journal of Sexual Offender Civil Commitment: Science and the Law*, 1, 11-16.

Tonry, M. (1987). Prediction and classification: Legal and ethical issues. In D. M. Gottfredson & M. Tonry (Eds.), Prediction and

- classification: Criminal justice decision making (pp. 367- 41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an Voorhis, P. (1994). Psychological classification of the adult male
prison inmat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Van Voorhis, P., Braswell, M., & Lester, D. (2000). Correctional
counseling & rehabilitation. OH: Anderson.
- Webster, C. D., Müller-Isberner, R., & Fransson, G. (2002). *Violence Risk
Assessment: Using Structured Clinical Guides Professionally*.
International Journal of Reonsic Mental Health Services, Vol 1,
No 2 (43-51) <http://www.violence-risk.com/risk/instruments.htm>
- Welfare & Institutions Code Section 6600-6609.3. 캘리포니아 성폭력 흉악
범(SVP) 법률, 캘리포니아.
- West, M., Hromas, C. S., Wenger, P., & Suthers, J. W. (2000). *State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s: 50-State Survey*. Colorado
Department of Corrections
- William L. Marshall & Dana Anderson & Yolanda Fernandez(2006)
[Cognitive behavioural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 England.
- Winick, B. J. & Lafond, J. Q. (2003). *Protecting Society from Sexually
Dangerous Predator Law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inick, B. J., & La Fond, J. Q. (2003). *Protecting Society From Sexually
Dangerous Offend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Zamble, E., & Quinsey, V. L. (1997). *The criminal recidivism proces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제2주제]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감독제도
효율화 방안

[발 표]

김 혜 정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 론]

강 은 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형 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보호정책과
서기관)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감독제도 효율화 방안

김 혜 정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논의의 배경 및 과정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 심각한 성폭력(살해)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가 실시하여 온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방지대책들이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결과, 성폭력범죄가 아래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범률이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성폭력범죄에 대응할 보다 적절한 재범방지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 1> 성폭력범죄(강간) 동종재범자 수(명)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동종재범자 수	459	469	778	730	527	671	756
1년 이내 동종재범자 수	203 (44.2%)	176 (37.5%)	303 (38.9%)	255 (34.9%)	177 (33.6%)	244 (36.4%)	280 (37%)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1년-2007년.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005년 4월 한나라당의원들에 의

하여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재범을 예방하겠다는 정책방안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러한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그 해 5월 13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가칭 ‘성폭력범죄예방을위한전자위치확인장치부착명령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도하였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을 제안하였다.¹⁾ 그러나 동법률안은 그 내용에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랜 시간 계류 중에 있던 것이, 지난 2006년 2월에 용산어린이 성폭행살해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어 동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고, 결국 지난 2007년 4월 27일 동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10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12월에 발생한 제주 초등학교 여학생 살해사건 및 지난 3월에 발생한 일산어린이 납치미수사건 등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충격적인 강력범죄의 여파는 다시금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고, 이에 정부에서는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살해하는 경우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한다)’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그와 함께 올해 10월 28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감독법’이라 한다)’의 내용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그 시행을 10월 28일에서 9월 1일로 앞당기자는 개정법률안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1) 동 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김혜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 16권 제3호, 2005, 239면 이하 참조.

이처럼 최근 늘어나는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가 성폭력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아동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비단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출소한 후에도 필요한 사후감독을 통해 범죄로부터 일반시민을 보호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이러한 재범방지대책이 지나친 인권침해를 유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형사법체제 하에서 어떤 사후감독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인가? 먼저 독일, 미국 등의 성폭력범죄 대응방안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형사법체제에서 가능한 감독방안과 그에 대한 효율화방안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II. 외국의 상황

1. 독일

독일에서도 1990년대 말 성폭력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가 되었다. 1996년 9월 바이에른州에서 상습강간범에 의하여 7살짜리 여아가 성폭행 당한 후 살해당한 사건과 그 다음해인 1997년 1월에 니더작센州에서 10살짜리 여아에 대하여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론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상당히 분노하게 되었고, 결국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위해 형법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²⁾ 이에 1998년 1월 ‘성범죄 및 기타 위험한 범죄와

2) 한상훈, “최근 독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입법과 성적 자기결정의 보호성”, 인도주의적 형사법과 형

의 투쟁을 위한 법률(Gesetz zur Bekämpfung von Sexualdelikten und anderen gefährlichen Straftaten vom 26. 1. 1998)' 및 제6차 형법전면개정법률(Strafrechtsreformgesetz vom 26. 1. 1998)을 통해 가석방 결정기준이 강화되었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안감호(Sicherungsverwahrung) 등의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성범죄자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는 등 성범죄관련 형법조항이 강성처벌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런가 하면 '성범죄 및 기타 위험한 범죄와의 투쟁을 위한 법률'을 계기로 독일 행형법 제9조 제1항에 “독일 형법 제174조 내지 제180조 및 제182조에 해당하는 범죄³⁾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고 독일 행형법 제6조 제2항 2문 또는 동법 제7조 제4항에 의거한 사회치료시설에서 치료받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수형자는 사회치료시설로 이송된다. 만약 수형자가 개인적인 이유에서 치료의 목적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시 본래의 수용시설로 이송된다”라고 규정하여 개정 전의 행형법 제9조에 의하면 사회치료 대상자들을 사회치료시설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였던 것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수형자는 당사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사회치료처우를 받는 대상으로 규정하여 아래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회치료의 실시가 증가되게 되었다.⁴⁾

이러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우변화는 비단 시설내처우에서 뿐만 아니라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하는 경우에도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인 행장감독(Führungsaussicht)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형사사법과 관련한 중대한 정책변화에 대한 논의의 결과, 지난 2007년 5월

사정책, 又凡 이수성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00, 202면 참조.

- 3) 독일형법 제174조 내지 180조 및 182조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보호자, 피구금자, 관청에 유치된 자, 시설내 피치료자 등에 대한 성적 남용, 직위이용 성적 남용,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적 남용 및 항거불능자에 대한 성적 남용 등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이다.
- 4) 물론 행형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본인의 동의를 요하고 있다.

독일연방의회에서 행장감독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기본논조는 독일에서 행장감독은 석방된 범죄자들의 사후통제 수단으로 일반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포기할 수 없는 제도라는 점에 두고 있다.⁵⁾ 특히 이번 행장감독 개정을 통해서 석방된 후 1년 정도까지의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2> 독일 사회치료수용자의 범죄유형

매해 3월 31일 현재	성범죄(%)	살인범죄(%)	재산범죄(%)	기타 범죄(%)	계
1997	191(23.2)	181(21.9)	367(44.5)	86(10.4)	825
1998	224(26.4)	196(23.1)	339(39.9)	91(10.7)	850
1999	315(33.9)	187(20.1)	326(35.1)	101(10.9)	929
2000	388(36.8)	219(20.8)	305(29.0)	141(13.4)	1,053
2001	437(40.1)	214(19.7)	286(26.3)	152(14.0)	1,089
2002	526(45.4)	221(19.1)	260(22.4)	152(13.1)	1,159
2003	685(51.3)	249(18.7)	245(18.4)	156(11.7)	1,335
2004	870(55.4)	298(19.0)	244(15.5)	159(10.1)	1,571
2005	989(58.8)	287(17.1)	234(13.9)	172(10.2)	1,682
2006	1,066(62.3)	304(17.8)	199(11.6)	141(8.3)	1,710

자료 : Heinz, Sozialtherapie im Strafvollzug, Kriminologische Zentralstelle e.V., 2006, S. 15.

구체적인 행장감독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종래에는 행장감독만 가능하던 것을 행장감독기간 동안 치료처우를 하도록 독일 형법 제68조b에 있는 준수사항⁶⁾이 개정되었다. 이는 많은 경우 형집행 또는 보안처분집행 중

5)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Pressemitteilungen 22. 03. 2007, 'Reform der Führungsaufsicht und Regeln zur Sicherungsverwahrung für sog. Altfälle beschlossen' 참조.

6) 보호관찰의 경우 독일 형법 제56조b에 따라 과거의 범죄에 대한 속죄 내지 응보의 관점에서 주어지는 과거지향적·형벌적 성격을 가진 Auflagen(의무사항)과 독일 형법 제56조c에 따라 재사회화의 이념에 근거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예방적 성격을 지닌 Weisungen(준수사항)을 모두 부과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행장감독은 장래의 재범위험성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제재인 만큼 독일 형법 제68조b에 따라 Weisungen(준수사항)만 부과된다.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진수명/김혜정, 각국의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1년도 법무부 용역과제), 2001, 163면 이하 참조.

에 성공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하여도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사후치료를 통해 치료효과의 계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그와 함께 제68조b 제1항 제3호의 준수사항에 “접촉금지” 및 “교통금지”를 새롭게 포함시켜, 예컨대 성폭력범죄자가 석방된 이후 범죄행위의 피해자를 새롭게 괴롭히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모르는 아동과 접촉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준수사항의 개정은 독일에서 구체적인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환영할만한 조치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⁷⁾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독일 형법 제145조a에 따라 지금까지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에서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정형이 상향조정되었다.

더불어 독일 형법 제174조 내지 제174조c, 제176조 내지 제180조, 제181조a 및 제182조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무기한 행장감독이 가능하도록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추가⁸⁾함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강경한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미 국

성범죄 발생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역시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도 지난 1987년 여자 어린이 폭행·유괴 사건으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2년 만에 6세 남자 어린이를 강간·살해한 Earl Shriner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들로부터 사회 안전을 확보할 수

7) Stellungnahme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Reform der Maßregel, 2005, S. 3(www.kags.de/html/fuehrungsaufsicht.html).

8) Vollbach, “Die reformierte Maßregel Führungsaufsicht: Kontaktverbot, Alkoholverbot, Nachsorgeweisung und unbefristete Führungsaufsicht”, MschrKrim, 2006/1, S. 43.

있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폭력적 성범죄자 대책법(Sexually Violent Predator Statutes)’이 제정되어, 동법률 안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도 민간이 운영하는 치료시설에 강제 수용되어 치료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⁹⁾

그런가하면 1994년 뉴저지주에서 7세의 여아가 2번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범죄자에 의해 강간·살해되는 사건을 계기로 일명 ‘메건법(Megan’s Law)’이 제정되어 성범죄자 등록제도 및 고지제도가 마련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다른 주에도 확대되어 결국 1994년 성범죄자의 등록제도를 규정한 연방법과 1996년 성범죄자등록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성범죄자 고지법이 연방법률에 제정되면서 현재 약 50개 주에서 신상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¹⁰⁾

그런데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에서 소위 ‘메건법’을 제정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였지만, 성폭력범죄자의 정보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2002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가석방된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s)이 장착된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하여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5년에는 플로리다주에서 각각 9세, 13세 여자 어린이가 성범죄 등 다양한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들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자들에게 종신형 또는 일정 기간 복역 뒤 평생 위치추적장치 착용을 골자로 한 ‘제시카런스퍼드 법안’이 주의회에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콜로라도주에서도 ‘평생감시법’을 제정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폭행한 자로서 상습성과 폭력성이 인정되고

9) 전영실 외 5인,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527면 이하 참조.

10) 전영실 외 5인, 앞의 보고서, 536면 참조.

정신과의사의 진단에 의해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배심원의 결정에 의해 전자감시를 통한 평생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 단순히 전자감독만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강제치료를 전제로 하고 있다.¹¹⁾

뉴저지주에서도 2005년 8월 ‘성범죄자 감시 시범프로젝트 법률(Sex Offender Monitoring Pilot Project Act)’에 근거하여 225명에 대하여 GPS방식의 전자감독을 시범 실시한 후, 지난 2007년 ‘성범죄자 감시법률(Sex Offender Monitoring Act)’을 제정하여 현재 GPS방식 전자감독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뉴저지주의 시범 실시결과를 살펴보면, 시범실시에 참여한 225명의 고위험 성범죄 중 전자감독 기간 중에 1명이 새로운 성범죄를 범하고, 19명이 이중범죄 또는 GPS규정 내지 감독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²⁾ 특히 미국 전체에 대한 미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출소한 성범죄자의 5.3%가 3년 내에 새로운 성범죄로 체포되고 그중 40%는 1년 이내에 새로운 성범죄로 체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³⁾

사실 미국에서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는 과밀구금의 대안으로써 보호관찰에서 감독기능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그 실시 초기에는 전자감독의 대상자로 재범위험성이 낮고, 폭력적이지 않은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폭력전과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자 또는 마약판매 및 제조로 인한 전과가 있는 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¹⁴⁾ 그러던 것이 최근 심각해진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안들이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성

11) issue brief 05-02, 여의도 연구소, 2005/5, 4면 이하 참조.

12) Corzine, “Report on New Jersey’s GPS Monitoring of Sex Offenders”, New Jersey State Parole Board, 2007. 12. 5, p. 2 참조.

13) Langan/Schmitt/Durose, Recidivism of Sex Offenders Released from Prison in 1994, U.S.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03(Corzine, 앞의 논문, 2면에서 재인용).

14) 홍정원,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원호 등 보호관찰기법에 관한 연구”, 법무연구 제25호, 1998, 248면.

폭력범죄에까지 전자감독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종래의 제재방식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래의 방식과 다른 전자감독은 최근에 시행되기 시작하여 아직 그 성과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국 역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본다.

3. 기타¹⁵⁾

일본의 경우에도 2004년 말 나라현 여자초등학생 유괴사건을 계기로 일본 사회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방지대책의 마련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에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을 교정단계와 보호단계로 나누어, 2005년 5월 25일 기존의 ‘감옥법’을 전면 개정한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통해 형집행중에 있는 수형자에게 수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처우단계에서의 처우프로그램의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2007년 6월 15일 종래 ‘범죄자에방갱생법’ 및 ‘집행유예자보호관찰법’을 통합한 ‘갱생보호법’을 제정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중 하나로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 전문적 지식에 기초하여 특정한 범죄적 경향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화된 절차에 따른 처우로서 법무대신이 정하는 것을 받을 것”을 규정함으로써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그램 수강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2004년 9월 일명 ‘창살 없는 감옥제도’를 도입하여, 성폭행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희망에 따라 대상자의 행위에 대하여 1-2m 단위로 24시간 감시하는 체제로 (인공)위성추적장치가 부착된 전자발찌를 채워 가석방을 시키고 있다.

15) 일본에 대한 내용은 전영실 외 5인, 앞의 보고서, 589면 이하 참조. 영국, 프랑스, 호주에 대한 내용은 issue brief 05-02, 4면 이하 참조.

프랑스에서도 2004년 말, 성폭력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그들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였다고 한다. 그 대상자는 성범죄로 5년 이상 복역한 자들로 전자팔찌 착용기간은 최고 20년 동안이라고 한다.

호주의 빅토리아주에서도 아동 성폭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평생감시체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하원에서 통과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들에게는 야간통금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한다고 한다.

Ⅲ. 전제되어야 할 몇 가지 쟁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성폭력범죄상황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경한 대응책의 마련이라는 형사정책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였고, 우리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최근 우리사회의 성폭력범죄 상황으로 인해 강경 대응의 필요성이 정책적으로 인정된다면, 문제는 그러한 강경 대응책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입안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먼저 몇 가지 쟁점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 체계적인 재범위험성의 평가

형벌을 마치고 출소한 성폭력범죄자에게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후적인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그 바탕에는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재범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입법된 대부분의 특별법에서 입법목적 내지 제재부과의 근거로 “재범위험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이처럼 재범위험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한다면, 이는 결국 보안처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할 것이다.

보안처분은 전통적인 형벌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범익보호과제의 실행이라는 목적에서, 형벌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회보호 내지 사회방위를 위하여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근대학파의 예방적 형법사고의 입장에서 형벌을 보완하는 제재로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형벌이 행위의 사회윤리적 비난을 표현하는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라면, 보안처분은 장래에 대한 예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과거에 행한 행위책임은 응보적 형벌에 의해 속죄가 된다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범죄자의 위험성은 보안처분을 통해서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¹⁶⁾

이러한 보안처분은 형벌 못지않은 중한 형사제재의 하나이다. 따라서 재범위험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포함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대상자에게 사후 감독제도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범위험성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장래에 대한 예측을 의미하는 재범위험성의 판단은 복잡한 사고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한 인간의 행동에 대하여 예측해야 하는 것으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대 형사정책에서는 위험성(내지 범죄)예측과 예방이 범죄가 일어난 다음의 사후대책보다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¹⁷⁾, 그렇다면 효과적인 범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위험성예측의 객관성 내지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합목적적인 정책내용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요구될 것으로 본다.

16) Bruns, "Rechtsgrundlage und Zulässigkeitsgrenzen strafrichterlicher Auflagen und Weisungen", GA, 1959, S. 195.

17) 배종대, 형사정책, 2005, 319면 이하 참조.

이를 위해 법원은 관련 전문가 집단과의 꾸준한 협동작업을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재범위험성 표지는 형의 양정에서 고려되는 “이중평가금지의 원칙(Doppelverwertungsverbot)”에 입각¹⁸⁾하여 형벌과 보안처분을 결정하는데 중복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미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추가제재를 부과하는데 그 판단요소로 사용된다면, 소위 이중처벌의 위헌성이 존재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¹⁹⁾

2. 감시가 아닌 감독의 필요성

형벌을 마치고 출소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재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그 대책은 단순한 감시가 아닌 감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감시란 사전적 의미²⁰⁾를 살펴볼 때, “경계하여 살펴봄” 또는 “단속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살핌”을 의미한다고 한다. 즉 감시는 단순히 행위자를 추적하여 그 행동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하여 감독이란 “보살피 단속함” 또는 “일이나 사람 따위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살피어 단속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즉 피감독자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피감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살핌을 통하여 그 행동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교정처우와 형사적 개입에 관한 효과성 평가에 있어서도 형사정책의 입안과 수행에 있어 단지 억제이론에 기초하여 범죄자에 대한 일방적

18) 이천현/김혜정, 양형 관련규정의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71면 이하 참조.

19) 이와 관련하여 상습범에 대한 대책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나, 논의의 집중을 위해 본 글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20) 이희승 감수, 민중 엣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2004 및 인터넷 Daum 국어사전 검색 참조.

인 감시와 통제만을 강조하는 형사제재수단은 거의 대부분 실패했다고 하는 평가결과가 나와 있다고 한다.²¹⁾ 따라서 출소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히 그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재범하지 않도록 사후보살핌을 통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²²⁾

무엇보다도 성폭력범죄의 경우 상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효율적인 재범예방은 일반예방보다 특별예방에 더 중점을 두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만약 출소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방안으로 단순히 감시제도만을 적용한다면, 자칫 성폭력범죄로부터 일반시민을 보호하는 일반예방에만 중점을 둘뿐 특별예방을 통한 범죄자의 재사회화는 도외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더욱이 범죄자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처우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재범방지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록 교정정책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해도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교정목적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

IV. 출소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감독방안

성폭력범죄자가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경우는 형집행을 모두 종료한 경우와 가석방을 통해서 출소하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자에 대한 감독방안과 관련하여 전자의 경우 형벌에 부가한 제재라면 후자

21) 김일수, 범죄인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법무부 용역과제), 2005, 299면 참조.

22) 미국에서도 종래 “Electronic Monitoring”이라는 용어가 “Electronic Supervision”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기술적 변화를 포괄하면서 보호관찰관 등이 대면적 접촉을 통해 범죄인을 지도·감독하고 치료·교정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처우적 측면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김일수, 앞의 보고서, 11면 참조).

의 경우 형벌을 대체한 제재라는 점에서 이론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동일한 접근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전자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발찌)의 착용

현재 출소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감독방안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전자감독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올해 10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될 ‘전자감독법’에 의하여 출소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법률에 의하면, ①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②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③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또는 ④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최장 5년까지 전자위치추적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전자발(팔)찌 등을 이용한 전자감독은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관찰에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전되어 온 하나의 감독도구(supervision tool) 또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²³⁾ 따라서 전자감독이라는 도구 또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사제재와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에도 전자감독은 별도의 규정 없이도 ① 독일 형법 제56조 이하에 따른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으로써, ② 급박한 보호관찰취소의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으로써(독일 형법 제56조 이하), ③ 독일 형법 제57조 이하에 따른 가석방시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으로써, ④ 독일 형법 제68조 이하에 따른 행장감독의 준수사항으로써, ⑤ 독일 형사소송법 제116조에 따른 미결구금

23) Turner/Hess/Myers/Shah/Werth/Whitby, “Implementation And Early Outcomes For The San Diego High Risk Sex Offender(HRSO) GPS Pilot Program”, Center for Evidence-Based Correc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2007. 11, p. 25 참조.

유예시 처분으로써 명령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²⁴⁾

이러한 전자감독은 지금까지는 주로 형벌완화적 관점에서 시설내구금의 대신으로 사회내처우와 관련하여 적용되어 왔으며 그에 대한 성과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²⁵⁾ 미국에서도 전자감독의 시행초기에는 교도소 수감자를 가석방하면서 가택구금(home confinement)의 수단으로 사용하다가, 점차 자유형을 선고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 전자감독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발전하면서 거의 모든 주에서 활용하게 되었다.²⁶⁾

그것이 최근에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서는 형벌강화적 관점에서 형벌을 마친 경우까지로 확대된 것이고, 전자감독이 독자적인 제재로 부과되기보다는 보호관찰 또는 행장감독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안처분이라는 제재와 접목되는 것이 법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전자감독이 형사제재를 집행하는 하나의 도구로써 어떤 제재와 접목되느냐에 따라 그 운영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자감독이 구금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느냐, 구금연장의 수단으로 사용되느냐, 즉 전자감독이 형벌의 집행과 관련하여 사용되느냐, 보안처분의 집행과 관련하여 사용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전자감독의 적용대상, 적용기간뿐만 아니라 전자감독의 기술적 수단과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한 고려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자감독은 동법률 제9조 제1항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부작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작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24일에 제안된 전자감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물론 이 기간은 미국의 평생감시기간에 비하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

24) Mayer, "Evaluation eines Modellprojekts zum Einsatz der elektronischen Fussfessel",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Strafrecht, 2004, S. 1.

25) 김일수, 앞의 보고서, 99면 이하;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제 12권 제2호, 2000, 112면 이하 참조.

26) Whitfield, "Electronic Monitoring Erfahrungen aus dem USA und Europa", BewHi, 1999, S. 47.

그러나 초기의 전자감독 결과보고에 따르면, 전자감독이 신체적인 자유의 제한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6개월 이상의 전자감독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는 전자감독 기간이 장기로 되는 경우 대상자가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²⁷⁾

사실 미국에서 형벌을 마치고 출소한 성폭력범죄자에게 평생 전자발찌를 채워 감독하겠다는 정책도 아직은 시행초기로 그 정책적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기간을 장기로 하는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동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5년의 범주 내에서 특히 중한 성폭력범죄자 내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 등으로 그 대상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신중하게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생각건대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어느 정도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을지 여전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²⁸⁾ 어쨌든 10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자감독이 출소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보다 효율성 있는 감독방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치를 추적하여 감시하기 보다는 그와 함께 적절한 부가조치를 마련하여 지도·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²⁹⁾

27) 정갑섭, “미국의 전자감시 시스템과 가택구금의 연구”, 교정연구 제3호, 1993, 93면; EMP연구반, “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보호 통권 제9호, 1999, 148면 참조. 참고로 2005년 8월 8일 현재 독일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전자감독기간은 아래와 같다.

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6개월 이상	계
대상자(명)	6	8	13	21	14	38	23	123

28) 지금까지 전자감독을 통한 기대효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자유형의 대체를 통한 교도소 과밀수용의 완화에 있다(전영실 외 5인, 앞의 보고서, 689면 참조). 독일에서 전자감시시범실시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Albrecht교수는 Badische Zeitung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경우 2000년 5월 시범 실시한 이래 2002년 6월 현재 총 72,000명의 수용자 중 약 4-5%에게 전자감시를 적용함으로써 과밀구금에 대한 해결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01.07.2002 Badische Zeitung Online).

29) 이와 관련하여 독일과 미국의 전자감독 운영방식에 대한 비교검토도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된다.

2. 기본적인 감독방안으로써 행정감독

출소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부착과 접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감독제도는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인 행정감독³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현재 우리 형사제재에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이 존재하느냐에 대하여 질문한다면, 그 대답은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을 형벌도 보안처분도 아닌 제3의 제재로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 2007년 4월에 제정된 ‘전자감독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형사제재에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인 행정감독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동법률은 전자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제재의 성격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전자감독의 성격을 형벌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 자칫 이중처벌의 논란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지어야 적용대상범 위 등 그에 따른 부가조치들을 확정지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보안처분은 책임을 근거로 부과되는 형벌과 달리 장래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부과되는 형사제재로 비록 사회의 보호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한 상이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현실에서 형벌과의 구별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어도 형벌과 보안처분은 법이론상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비록 보호감호의 폐지로 현재 집행면에서 대체

예컨대 독일(프랑크푸르트)의 경우, 컴퓨터를 통한 감시는 중앙컴퓨터가 담당하고 보호관찰관은 24시간 전화(핸드폰)를 통해 전자감독대상자와 연결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미국(필라델피아)의 경우, 컴퓨터를 통해 감시하는 업무는 Electronic Monitoring Coordinator에 의해 수행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과시간에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30) 필자는 보호관찰과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을 구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혜정, “법적 성질의 재고찰을 통한 보호관찰의 형사정책적 지위정립”,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 2001, 111면 이하 참조). 따라서 본 글에서는 편의상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을 “행정감독”으로 칭하기로 한다.

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 형사법체제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구별하는 형사 제재의 이원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¹⁾ 그런 점에서 본다면, 책임에 부합한 형벌을 부과 받은 경우에도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추가적인 보안처분의 부과가 법이론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법률에서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이중처벌의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1) 효율적인 행장감독 집행을 위한 준수사항의 부과

이러한 행장감독을 부과하는 경우, 행장감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준수사항에는 기본적으로 일반시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일반예방적 목적을 위한 준수사항과 해당 범죄자를 개선하여 재사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위한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현행 전자감독법 제14조 제2항의 “주거를 이전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제15조 제2항의 “부착기간 중 피부착자의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피부착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두고 있어 일정부분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을 통합하여 준수사항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³²⁾

이를 위해 행장감독을 보호관찰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

31) 오영근, 형법총론, 2005, 811면.

32) 때마침 지난 4월 24일에 제안된 ‘전자감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9조 제2항에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다.³³⁾ 따라서 행장감독을 위한 별도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내용으로는 예컨대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① 거주지 또는 직장을 변경할 때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거나 또는 주거지 또는 체류지 또는 일정한 범위를 감독청의 허락 없이 떠나지 못하게 하고, ② 재범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특정한 사람(피해자 포함)과의 접촉을 금지하도록 하고, ③ 재범의 기회 또는 자극을 줄 수 있는 특정한 장소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④ 상황에 따라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특정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③번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아동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 예컨대 학교, 학원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한다거나, ④번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아동관련시설의 취업을 제한하는 준수사항의 부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가 하면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① 일정간격으로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하도록 한다거나, ② 취업을 알선해 준다거나, ③ 지속적인 치료처우를 받도록 한다거나, ④ 알코올 내지 약물중독 등이 있는 경우 수강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치료준수사항에 대하여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치료준수사항의 강화

효율성 있는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출소한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위치추적장치를 착용시켜 행장감독하는 감시기능만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치

33) 독일 형법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의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은 제56조b와 제56조c에 규정하고 행장감독의 준수사항은 제68조b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양제도의 법적 성격의 차이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료·개선을 통하여 장래에 재범에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의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교정시설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치료효과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소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처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난 2007년 5월 행장감독의 개선방안을 통해서 종래 독일 형법 제68조b 제1항에 규정된 행장감독의 준수사항에 10호 및 11호를 신설하여 “알코올 또는 기타 각성제를 복용하지 말고, 신체적 침해와 관련 없는 알코올이나 중독물질통제를 받을 것”과 “특정시간 또는 정해진 간격으로 의사, 심리치료사 또는 법정병원에 갈 것” 등을 규정하고, 특히 제2항에 법원은 치료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단순히 전자장치를 이용한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경우 강제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현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단순 구금은 범죄예방이라는 형벌목적은 달성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반성과 함께 교정시설에서의 치료처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료감소 시설이나 교정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출소하는 경우에 그 치료효과를 출소 후에도 유지시키는 노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준수사항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비록 행장감독에 적절한 준수사항을 부과한다고 해도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면 효율적인 감독으로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준수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함께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보호관찰의 경우, 구금을 - 그것이 형벌이 되었든 아니면 보안

처분이 되었든 - 일부 면제해 주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구금한다거나 가석방을 취소하고 재구금하는 것처럼 보호관찰을 취소하고 시설 내에 구금할 수 있으므로 준수사항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형벌을 모두 집행 받고 출소한 대상자에게 행장감독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이미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경우이기 때문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의 경우처럼 행장감독의 취소를 통해 다시 시설 내에 구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준수사항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하여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형법각칙에서 행장감독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를 개별범죄별로 규정³⁴⁾하면서 행장감독의 부과에 따른 제68조b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45조a에 “행장감독기간 중 제68조b 제1항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행장감독의 목적을 위태롭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효과적인 사후감독을 위해서는 행장감독과 함께 대상자에게 적절한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준수사항의 성실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감독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³⁵⁾

34) 독일 형법은 형법각칙에 행장감독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범죄로 피보호자, 피구금자, 피감호자, 요부조자, 아동, 항거불능자 및 청소년 등에 대한 성적 남용과 같은 성폭력범죄, 인신매매 및 인질관련 범죄, 강도죄 및 방화죄 등과 같은 중범죄에 대하여 행장감독 부과에 대한 개별규정을 두고 있다.

35) 지난 4월 24일에 제안된 전자감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제39조에 “피부착자가 제9조제2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벌칙조항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3.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열람제도의 구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감독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것으로 신상공개를 들 수 있다. 2000년 7월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의 제정과 함께 도입된 신상공개제도는 지난 2007년 7월 전면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열람제도로 그 모습이 변화되었다.³⁶⁾

종래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그 법적 성격이 뚜렷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이번 전부개정법률을 통해 제32조 제2항에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대상자에게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도록 하고, 제38조 제1항에서 법원이 신상정보열람대상자를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하는 사법판단으로 신상공개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그 법적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됨으로써 형사재제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신상공개를 사법판단이 아닌 행정판단으로 하고 있었던 종래의 문제점이 해결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열람이라는 신상공개는 성범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범죄사실 등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는 누구라도 성범죄를 범할 때에는 자신의 신상도 공개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을 주어 범죄를 예방하려는 일반예방적 기능과 행위 당사자에게는 특별예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위험성을 바탕으로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보안처분의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우선 바람직하다고 본다.

36) 동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김혜정, “성범죄자 정보등록·열람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2007, 872면 이하 참조.

(1) 행장감독의 준수사항으로써 신상정보의 등록

다만, 여기에서 등록제도와 열람제도는 분명하게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관할 경찰서장은 그 내용을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송달하고(동법 제33조 제3항),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그 내용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4조).

이러한 신상정보의 등록은 등록기관이 실질적으로 제재를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등록내용도 이미 형사절차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등록된 정보는 결국 수사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명확한 근거규정을 가지고 등록된 정보자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자료의 오·남용에 대한 통제를 철저하게 한다는 전제 하에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⁷⁾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러한 신상정보등록은 출소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행장감독의 준수사항으로 포섭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준수사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행장감독의 준수사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그 안에 거주지 또는 직장의 변경을 감독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신

37) 범죄자에 대한 자료수집은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경찰청, 검찰청 및 본적지 시·군·읍·면사무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관리하는 전과제도에 비추어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대한 위헌의 소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김태명,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열람제도에 대한 검토”, 청소년성보호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 2007. 4. 19, 2면 참조). 특히 최근에는 범죄자의 유전자정보 수집·관리와 관련하여 법무부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서 지난 2006년 8월 국회에 상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의안번호 174668 참조). 참고로 독일의 경우도 이미 형사소송법 제81조의g에 유전자정보수집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상정보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준수사항으로의 포섭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이 준수사항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감독관청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아니라 법무부 내지 법원 산하에 있는 행장감독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그 등록관청이 보호관찰소 내지 행장감독청과 같은 사법기관으로 되는 경우, 대상범죄자의 입장에서도 별도의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자신이 부과 받은 형사제재를 담당하는 기관에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게 됨으로써 이중처벌의 인상도 배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신상정보의 등록이 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 심리적 부담이 되어 재범에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바탕으로 본다면, 궁극적으로 감독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준수사항으로써 신상정보등록의 결정도 판결로써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2)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열람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열람의 경우, 개인의 신상이 열람자에게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명예형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으면서 공개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등록제도와 같이 준수사항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성범죄자 신상정보열람의 법적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인정한다면, 신상정보등록제도와는 달리 보안처분의 새로운 유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처럼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열람제도는 제재적 성격을 명확하게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제재로써 신상정보등록의 경우보다는

그 대상범위를 제한하여 중한 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신상정보열람의 경우, 낙인효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열람제도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과잉처벌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생각건대, 신상정보열람의 법적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본다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반드시 재범위험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범위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⁸⁾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결로써 성범죄자의 정보열람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방침은 타당하다고 보나,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인 공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 결론에 대신하여

1. 종합대책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은 형법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특별법에 각기 다른 모습의 제재방안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형법보다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형벌을 통한 재범방지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열람제도 및 취업제한을 통한 재범방지대책을 규정해 놓고 있

38) 보안처분은 형벌 못지않은 중한 형사제재로 보안처분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원인행위로서의 범죄 행위와 장래 재범위험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재범위험성이라는 요건 심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또 ‘전자감독법’에서는 전자위치추적장치의 부착을 통하여 재범방지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처럼 각각 다른 법률에 각각 다른 내용의 재범방지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보니,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도 각기 다른 법률에서 각기 다른 제재방안을 적용해야 함으로써 실질적인 집행에 들어가서 과연 체계적인 재범방지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예컨대 하나의 성폭력범죄에 전자감독과 신상정보 등록이 필요한 경우, 현재와 같이 그 감독기관이 다른 경우, 집행상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효율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법률의 재정비를 통해 그 안에서 종합대책을 세우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2. 비례성원칙 및 최후수단성의 유지

현재 우리의 성폭력범죄 상황에 입각하여 아무리 정책적으로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형벌을 비롯한 형사제재 자체가 또 다른 침해요 해악이라는 점에서 형벌의 보충성 내지 비례성원칙(과잉금지원칙)과 같은 형법기본원칙에 대한 고려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더욱이 사후 감독방안으로 언급되는 대부분이 보안처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 더욱 더 그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는 최소 필요한 범위에서 과잉처벌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객관적인 재범위험성 판단을 바탕으로 비례성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예컨대 하나의 성폭력범죄가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제재수단의 적용을 위한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재범방지목적이 한 개의 처분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여러 개의 수단 중에 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부담이 적은 제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일수, 범죄인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법무부 용역과제), 2005.
- 김태명,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열람제도에 대한 검토”, 청소년 성보호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 2007/4/19.
-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 2000.
- 김혜정, “법적 성질의 재고찰을 통한 보호관찰의 형사정책적 지위정립”,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 2001.
- 김혜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2005.
- 김혜정, “성범죄자 정보등록·열람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2007.
- 배종대, 형사정책, 2005.
- 오영근, 형법총론, 2005.
- 이천현/김혜정, 양형 관련규정의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전영실 외 5인,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정갑섭, “미국의 전자감시 시스템과 가택구금의 연구”, 교정연구 제3호, 1993.
- 진수명/김혜정, 각국의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무부 용역과제), 2001.
- 한상훈, “최근 독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입법과 성적 자기결정의 보호성”, 인도주의적 형사법과 형사정책, 又凡 이수성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00.

홍정원,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원호 등 보호관찰기법에 관한 연구”, 법무연구 제25호, 1998.

EMP연구반, “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보호 통권 제9호, 1999.

Bruns, “Rechtsgrundlage und Zulässigkeitsgrenzen strafrichterlicher Auflagen und Weisungen”, GA, 1959.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Pressemitteilungen 22.03.2007.

Corzine, “Report on New Jersey’s GPS Monitoring of Sex Offenders”, New Jersey State Parole Board, 2007/12/5.

Mayer, “Evaluation eines Modellprojekts zum Einsatz der elektronischen Fussfeßel”,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Strafrecht, 2004.

Stellungnahme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Reform der Maßregel, 2005.

Turner/Hess/Myers/Shah/Werth/Whitby, “Implementation And Early Outcomes For The San Diego High Risk Sex Offender(HRSO) GPS Pilot Program”, Center for Evidence-Based Correc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2007/11.

Vollbach, “Die reformierte Maßregel Führungsaufsicht: Kontaktverbot, Alkoholverbot, Nachsorgeweisung und unbefristete Führungsaufsicht”, MschrKrim, 2006/1.

Whitfield, “Electronic Monitoring Erfahrungen aus dem USA und Europa”, BewHi, 1999.

[제3주제]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특별법과
양형정책의 개선방안

[발 표]

김 한 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토 론]

이 경 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공 주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형사7부 검사)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특별법과 양형정책의 개선방안

김 한 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성폭력의 피해는 참혹하고 절망적이며 파괴적으로 경험된다. 신체적 정신적 침해의 경험은 깊고, 위협받고 있다는 느낌은 끊임없이 지속된다. 충격과 정신적 공황상태는 폭행 이후에도 장기간동안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마비시킨다.¹⁾

때문에 모든 문명사회에서 성폭력범죄는 극히 반인간적이고 폭력적인 범죄의 하나로 인식되고 다루어진다. 나아가 어느 폭력범죄보다도 남성-여성, 성인-아동, 사회적강자-약자간의 관계 안에서 범죄의 원인과 범죄발생의 상황과 범행후정황,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요인은 사회문화와 경제현실과 맞물리며 더욱 복잡다단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성폭력범죄는 법제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차원에서도 범죄예방,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신중하고도 효과적인 대책이 요청되는 형사정책적 문제다.

무엇보다도 성폭력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사제재와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입법 및 형사정책의 수립은 성폭력범죄의 발생실태와 형사절차의 대응결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바탕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2008년 법무부 성폭력특별법개정안 (속칭 ‘혜진예슬법’²⁾)이 나오게 된 일련의 성폭력범

1) 강은영, 김한균,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타당성조사, 여성가족부, 2007, 195면

2) 고 이혜진의 어머니는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헤아려’ ‘정치권과 언론이 개정법을 혜진예슬법으로 부르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동아일보 2008년 4월28일자) 이에 따라 법무부 또한 동 명칭의 사용을 중단하였다.(2008년 4월28일, 법무부 보도자료 ‘가칭, ‘혜진, 예슬법’ 명칭 사용에 대한 법무부 입장’, www.moj.go.kr) 성폭력범죄에 대한

죄사건 직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의 근거로 들어진 성폭력범죄자의 ‘높은 재범율’은 객관적 근거라 하기 어렵다.³⁾ 과학적 근거에 기반할 때 성폭력범죄재범방지를 위한 입법과 정책수단의 계획과 실천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여론에 떠밀린 전시성 단기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형사입법과 형사정책이 성폭력범죄현실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사후적 뒤풀이에 급급할 것인지는, 체계적 문제인식과 연구검토의 여부에 달려있다.

1. 성폭력범죄의 문제현실과 형사정책적 과제

성폭력범죄는 형사사법정책에서 사회적 관심의 수준이 높고, 정책적 필요성과 형사법에 대한 법치국가적 제한원칙이 종종 부딪히는 영역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는 상습성, 재범성이 높고⁴⁾ 사회적 약자를 피해자로 삼는다는 점에서 엄벌위주의 양형에 대한 요청이 어느 다른 범죄에 대해서보다 높은 범죄적 특징을 가진다. 때문에 과도한 형사제재나 명목적인 수준에 지

모든 대책에는 형사법적 고려뿐만 아니라 인권감수성, 성적차이존중의 관점(gender perspective), 사회문화적 이해가 절실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피해자의 이름을 붙인 형사특별법의 제정은 1994년 미국의 메간법(Megan's Law)에서 유래하였다. 이 법의 정식명칭은 Sexual Offenders (Jacob Wetterling) Act of 1994로서, 형기 또는 치료처분종료 후 성범죄자등록(Sex Offenders Register)제도를 도입하였다. 1994년 성범죄전과자에 의해 피살된 메간의 부모가 직접 설립한 재단(Megan Nicole Kanka Foundation)의 입법청원운동의 성과다. 이와 유사하게 2000년 영국에서도 성범죄전과자에 의해 피살된 아동의 부모가 언론사와 함께 사라법(Sarah's Law) 입법운동을 통해 성범죄자등록부 공개를 입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 3) 언론보도를 통해 이른바 전문가들이 언급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율이 50% 이상이라는 부분은 공식통계(대검찰청 범죄분석,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상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1997-2006년 기간중 공식통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자의 약50%가 재범자다. 그러나 이중 약 86%는 성폭력범죄 이외범죄의 이중재범자이며, 성폭력범죄 동종재범자는 14%에 불과하다. 동종재범율에서는 전체범죄가 30%수준인데 비해, 성폭력범죄의 경우 13%수준으로 오히려 낮다. (전영실 외,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130-131면 참조) 2004년 일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성폭력범죄전과자에 의한 아동유괴성폭행살인사건 직후 성범죄자재범율 41%라는 언론 보도에 따라 재범방지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부각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높은 재범율에 대해서는 산출경위가 불분명하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전영실 외,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2007, 591-592면 참조)
- 4) 이수정, 성범죄재범율에 관한 바른이해와 재범방지대안모색,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005, 83면

나지 않는 치료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실효성은 없으며 형사사법자원을 낭비할 뿐인 결과에 이를 위험도 높다.

유럽과 영미권 국가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과 재범방지정책의 동향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우려로부터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들고자 하는데로 말해주는 정치적 수사(rhetoric)부터 앞세우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면서도 합리적 체계적 양형정책과 효과적인 격리와 치료, 사회내처우를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정책방안들을 개발하고 실천에 옮기는 노력에서 정책적 역량을 목격할 수 있다. 이는 개별 성폭력범죄유형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정책대안마련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인권보장과 피해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바탕을 두고 형사정책을 구성, 실천에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는 이른바 강력범죄, 폭력범죄 중의 하나의 범죄유형으로서 전통적인 형법이론과 형사정책 틀 안에서 성폭력범죄의 범죄적 특성과 정책적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했다. 21세기 새로운 형사정책적 의제(agenda)로서 성폭력범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 재범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과 대응

‘성폭력범죄자에 의한 성폭행 살해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매번 유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 여론이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잊혀지고 다시 성폭력범죄가 재발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 김씨도 지난 2001년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4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출소했다. 더구나 김씨의 이번 범행장소는 2001년 범행장소에서 불과 몇 백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김씨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지난 2월 서울 용산 여자 초등생 성추행 살해사건 이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단죄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는 성폭

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입법예고까지 했다.⁵⁾

우리사회에서 성폭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형기만료 후 1년 이내 재범율은 30-40%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⁶⁾ 성폭력범죄 재범의 심각성은 사회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문제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여론과 치료처우가 필요하다는 이른바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발언이 되풀이되고, 뒤이어 입법부와 행정부의 각종 법률개정안이 제기되다가 여론의 관심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법과 정책프로그램의 실천도 동력을 잃고 마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

‘서울 강동경찰서는 성범죄로 수감생활을 한 뒤 보호관찰 기간에 또 다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김 모(4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성폭력 등 성폭력범죄로 15년이나 수감생활을 하고 지난해 말 청송감호소에서 가출소했다. 이처럼 청송감호소 출신자들의 재범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⁷⁾

상습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제재만으로는 사회를 보호하기 어렵다. 치료개선프로그램만으로도 재범방지가 실현되지는 않는다. 오직 성범죄 현실에 대한 객관적 연구에 바탕한 제재와 치료개선을 통합한 체계적 대응

5) 경향신문 2006년 9월 15일자

6) 김한균, 강은영, 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 방안, 법무연수원, 2006, 제2장 제1절 1.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 참조

7) 내일신문 2006년 3월10일자

노력이 지속될 때만이 재범을 최소화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 일 수 있다. 재범현실을 엄연히 인식하면서도 법제도정비에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은 현실은 성범죄재범방지정책의 불성실성을 드러내 보인다.

(3) 상습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다면적 제도보완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상습 성폭행범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해서 치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대상 성범죄나 상습적 성폭행범은 단순구금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교도소 재소자 3만여명 가운데 12%가량이 성폭력사범이다. 이 가운데 19세 미만 미성년을 폭행한 사범은 1604명으로 40%에 이른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조차 힘든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아동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소아성기호 증에 대해 치료감호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아동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충격이 인생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집중치료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습성이나 범죄대상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나 치료프로그램,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 다양한 성폭력재범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⁸⁾

성범죄는 단일한 범죄현상이 아니다. 범죄의 원인만큼이나 다양한 형태의 범죄로 발현되는 바, 우발적 성매매범, 정신질환적 상습범, 인격장애적 성폭력범, 아동대상, 특정인대상 성폭력범, 변태적 성범죄자, 기회적 성추행범죄자 등 여러 형태를 띠며, 재범의 정도에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성범죄유형별로 재범방지대책 또한 다차원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그 범죄의 심각성과 잔인성으로 인해 가장 시급한 형사정

8) 내일신문 2006년 11월14일자

책현안이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처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교육을 통한 재범방지

‘정부가 성폭력범죄 사범의 재범 방지 교육제도를 시행한 뒤에도 성폭력 사범의 재범죄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폭력 사범의 재범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어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하반기부터 청소년위원회가 ‘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폭력사범의 재범죄율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고 있지만 20세 이하의 청소년·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⁹⁾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에 치료 및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경험을 가진 나라들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프로그램은 있을 수 없다.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범죄의 다차원적 원인에 맞춘 다각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정책적 투자와 성실한 집행을 통해 재범을 가능한 한 최소수준으로 유지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성폭력범죄자 치료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시작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아직 전문적이고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시행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도 않은 시점에 재범방지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설부르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행 치료프로

9) 서울신문 2006년 9월22일자

그램에 더 많은 정책적 관심과 투자를 기울여야 한다는 요청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형법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강간 (297조)	3년 이상 유기징역			19세 미만여자 강간(7조 1항)	5년 이상유기징역
강제추행(298조)	10년 이하징역,1500 만원 이하벌금			19세 미만자 강제추행 (7조2항)	1년 이상 유기징역,500-2000만 원 벌금
준강간, 준강제추 행(299조)	297,298조			19세 미만자 준강간, 준강제추행	7조 1,2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 추행(305 조)	297,298, 301, 301의 2조	13세 미만 강간(8조의 2 1항)	5년 이상 유기징역		
		13세 미만 강제추행(8조 의 2 2항)	1년 이상 유기징역, 500-2000만원벌금		
		13세 미만 준강간, 준강제추행(8 조의 2 3항)	5년 이상 유기징역 1년 이상 유기징역, 500-2000만원 벌금		
		특수강간 (6조 1항)	무기, 5년 이상 징역		
		특수강제추행 (6조 2항)	3년 이상 유기징역		
		특수준강간 강제추행(6조 3항)	6조 1,2항		
		친족관계 강간 (7조1항)	5년 이상 유기징역		
		친족관계 강제 추행 (7조2항)	3년 이상 유기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친족관계 준강간, 준강제 추행(7조3항)			

		장애인간음 (8조)	형법 297조,298조와 동일		
강간상해, 치상(301조)	무기, 5년 이상 징역	강간상해, 치상 (9조)	무기, 7년 이상 징역		
강간살인 강간치사 (301조의 2)	사형, 무기징역 무기, 10년 이상 징역	강간살인 (10조1항)	사형, 무기징역		
		강간치사 (10조2항)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302조)	5년 이하 징역	위계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간음추행 (8조의 2 4항)	5년 이상 유기징역 1년 이상 유기징역, 500-2000만원벌금	위계위력에 의한 19세 미만 여자간음, 청소년추행	7조1, 2항
피감호부녀간음(303조1항)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	피감호부녀 추행(11조 1항)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벌금		
피구금부녀간음(303조2항)	7년 이하 징역	피구금부녀 추행(11조 2항)	3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벌금		
혼인빙자간음(304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벌금				
추행간음 목적약취유인매매(288조)	1년 이상 유기징역				
피약취유인매매자수수은닉(292조)	7년 이하 징역				
상습추행간음목적약취유인매매, 미수(293조)	10년 이하 징역				
강도강간 (339조)	무기, 10년 이상 징역	주거침입절도강간, 강제추행 (5조 1항)	무기, 5년 이상 징역		
		특수강도강간, 강제추행 (5조 2항)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		

(1)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특별법의 도입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특별법은 1989년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시작되었다. 즉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가 강간, 강제추행을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형사특별법규정이 신설되었다(동법 제5조의 6).

‘각종 범죄가 다발하고 흉폭화하여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소위 가정과괴범 등에 대하여 중형을 부과하여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범죄 예방효과를 기하려’¹⁰⁾는 것이 입법이유였다.

이어 1991년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여성, 사회단체가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성폭력범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는 성폭력범죄근절과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 특위는 1992년 성폭력 특별법 시안을 내놓았다. 이어 1991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각 정당에서도 성폭력 특별법 시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3년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고, 199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별형사법이 도입된 요인은 성폭력 범죄피해현장에서 활동해온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의 노력,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폭력 문제가 부각되었던 사회적 상황이라 볼 수 있다.

(2)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의 문제점

기존의 형법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주력하였다면,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

10) www.klaw.go.kr/DRF/link_sframe.jsp

찰 등 사후적 관리체계,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대책을 포함한 통합입법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1994년 법은 민간단체 및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핵심내용인 성폭력범죄개념의 재규정과 친고죄폐지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즉 기존의 ‘정조에 관한 죄’를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죄’로 바꿈으로써 마치 성폭력피해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잘못된 인식을 고쳐야 한다는 점,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친고죄를 전면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 성희롱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계속된다.

(3) 성폭력특별법의 개정경과

1994년 성폭력특별법은 2008년 5월 현재까지 11번에 걸쳐 거듭 개정되었다. 이중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개정에 따른 개정 외에 가중처벌과 처벌조항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주요개정은 1997년, 1998년, 2003년, 2006년 개정이다.

1997년 개정법은 미성년자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절차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강간’ 등에서 친족의 개념을 ‘4촌 이내의 혈족’에서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범위를 확대했고(제7조4항),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처벌에서 피해대상을 신체장애인에서 정신상 장애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제8조). 또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중처벌하고 이를 비친고죄로 했다(제8조의2, 제15조). 특히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으며(제22조의2),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 교육, 치료하는 사람이 보호받는 학생의 피해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제22조의 3).

1998년 개정법에서는 당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카메라, 비디오 등을 이용한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제14조의 2).

2003년 개정법에서는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즉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수사기관에서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로 촬영, 보존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제21조의 2), 의무적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하며(제22조의 3), 공판기일에 출석이 어려울 경우 증거보전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제22조의 6). 또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의 중계 장치에 의해 신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2조의 4).

가장 최근인 2006년 개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있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였다. 즉 기존의 형사법체계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연령에 따른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구별기준에 따라 간음과 추행으로만 구별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정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한 자를 간음죄 및 추행죄와 구별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8조의2 2항). 또한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등이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1조3항).

또한 통신매체를 악용한 성폭력범죄증가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을 가중하고(제14조), 본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촬영물의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다(제14조의2).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2006년 개정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자의 추행 및 장애

인 보호시설 종사자 등의 간음·추행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함으로써 친고죄의 범위를 축소했다(제15조).

특히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를 금지하였다. 이제까지는 성폭력범죄의 수사·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의 공개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모든 자에 대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제21조3항, 제35조1항3호, 제35조2항). 또한 성폭력범죄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미리 지정된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또는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피해자전담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제21조의 2). 뿐만 아니라 의무적 진술녹화의 대상자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다(제21조의 3). 이제까지는 13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의 경우에만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의무화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동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 재판에 있어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하였다(제22조의3).

(4) 2000년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과 개정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피해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성매매와 성폭력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형법 - 성폭력특별법 - 청소년성보호법으로 구성된 현행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체계가 마련되었다.

2000년 법의 특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처벌강화뿐만 아니라, 해당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범죄방지수단을 도입했다는 데 있다(제20조). 즉 청소년 본인,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2조, 제5조), 폭행·채무·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 등을 제공하는 행위(제6조, 제7조), 청소년이 등장하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제8조)를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간음 추행하는 행위도 가중처벌한다(제10조).

동법은 2007년 전면 개정되었는데,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강화를 통한 재범 발생억지와 피해청소년보호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즉 친아버지 등에 의한 성범죄는 지속성을 특성으로 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해임결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보호시설에 보호위탁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4조, 제15조).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여타의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친고죄로 하고 있어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였다(제16조).

특히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인식에 근거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

고, 등록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13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일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열람권자를 관련 피해자 등에서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으로 확대하였다(제32조, 제35조 및 제37조).

(5)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입법정책의 경향과 2008년 성폭력특별법개정안

성폭력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과 개정경과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입법정책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드러낸다. 즉 첫째 성폭력범죄의 심각화에 따른 법정형의 가중(특히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둘째 성폭력범죄현상의 다양화에 따른 구성요건의 세분화, 셋째 성폭력피해자보호강화를 위한 절차규정정비, 넷째 성폭력피해자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수단과의 연계강화가 그것이다.

강력한 형사제재수단이 허용된 촘촘하게 짜여진 형사법체계가 성폭력범죄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고 피해자를 더욱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기존 형법전 외 형사특별법들의 제정과 잦은 개정으로 인한 중복적 규정과 법정형의 비체계성이라는 문제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2008년 법무부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¹¹⁾은 첫째, 둘째 정책경향의 결과라 보여지는 한편으로, 앞서 지적된 바 문제점에 대한 개선노력은 찾기 어렵다.

동개정안은 첫째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둘째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유사성교행위

11) 법무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법무부공고 제2008-35호).

에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추가하였다.

셋째,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넷째,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였다.

다섯째,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살해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하였다.

여섯째, 13세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였다.

성폭력범죄로 인해 상해케 한 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은 법정형하한을 상향조정하여 아동대상성범죄자가 집행유예를 받고 재범으로 나아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특히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후 살인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케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중형주의적 입장을 확인하였다.

기존 성폭력특별법 제9조 제1항은 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강간, 특수강간(제5조1항, 제6조)의 범죄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제10조 제1항은 동법상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강간, 장애인간음(제5-8조),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강제추행 범죄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제10조 제2항은 동법상 특수강간, 친족관계강간, 장애인간음(제6-8조) 범죄자가 사람을 치사

케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이미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개정안상의 ‘성폭력범죄’를 성폭력특별법 제2조가 규정하는 죄¹²⁾로 본다면,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기존법 제9조 1항, 제10조의 규정대상 외에, 동법 제8조의 2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교행위 등을 포함한 성폭력범죄에 의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행위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범죄내용	현행	개정안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후 살해		사형, 무기징역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상해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강간	5년 이상 징역	7년 이상 징역
유사성교행위	3년 이상 징역	7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벌금	3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벌금

- 12) 제2조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등의 반포등)·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쇄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 2(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죄
- ②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후 살해죄는 이미 사형이 법정최고형이고 실제 양형도 최소 무기형에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현실에서 법정형만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며 이미 양형상 무기징역이하인 경우가 없는 실정에서 마치 법으로 형을 높인 것처럼 하는 것은 전시효과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¹³⁾

또한 성폭력범죄관련 중복된 법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법해석과 법적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기존의 비판¹⁴⁾은 2008년 개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될 것이다.

3. 2008년 성폭력특별법개정안의 검토

2008년 개정안에 대해서는 규정의 중복으로 인한 체계적 문제와 법정형의 가중으로 인한 중형의 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1) 형법체계상의 문제

1)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력범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한 중형규정을 중첩적으로 둔 것은 법체계가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사회적 의지의 천명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의지의 표명이 법조문의 신설에만 그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전시효과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법무부의 2008년 성범죄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은 특별법개정에만 머물지 않는다. 2008년중 성폭력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구속피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감식정보를 채취해 이를 수사나 재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전자

13) 법률신문 2008년 4월 7일자 참조.

14) 전영실 외,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2007, 699면.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대상상습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집행종료 후 수용치료처분을 통해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석방부적격자로 분류하여 가석방을 불허하고,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0월부터 시행된다.¹⁵⁾

2) 처벌의 엄격성보다는 확실성이 범죄방지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중복적 규정들을 정비하여 법적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중복적 규정의 정비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¹⁶⁾ 물론 중복되거나 겹친 세세한 규정들의 체계적 정비는 법도그마틱상의 문제이지, 성폭력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우선적 과제는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중복되거나 겹쳐진 규정들로 인해 효과적인 형사소추가 저해된다거나, 체계적으로 정비된 형사법이 지금의 형사특별법체계보다 잠재적 성폭력범죄자들에게 처벌에 대한 인식을 더 분명히 해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입법과 형사정책이 체계적인 기획 하에 구성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성폭력범죄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를 때마다 관련부처마다 대책과 법령개정안을 제각기 내놓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은 매년 되풀이해서 제기된 현안이었는바, 2006년의 경우를 보면 당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상성폭력범죄 개념을 도입하여 아동청소년,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한다는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15) 법무부, 아동 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 2008년 4월 1일 국무회의 발표자료(www.moj.go.kr)

16) 중복적 규정의 정비는 잠재적 성폭력범죄자에게 처벌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전영실 외,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2007, 701면).

당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외에도, 법무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었고, 당시 여성가족부 또한 13세 미만 아동성폭력특별법을 마련하였다. 이들 각 법안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유형을 반영하고, 강화된 형사제재를 수단으로 성폭력범죄를 방지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과 이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성폭력특별법이 있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은 특별법의 특별법이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범죄 - 성폭력범죄라는 '이중의 특수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이러한 이중의 특수성이 특별법의 특별법까지 요청할 정도인지, 더구나 그러한 특별한 특별법이 다시금 형사제재의 가중을 내용으로 할 때 그 실효성과 정당성의 문제는 없는지에 관한 신중한 성찰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지금도 여전히 지적될 문제다.

3) 2006년 개정법 제8조의2 제2항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유사성교행위에 대해 단순 강제추행죄 보다는 강간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벌로 대처해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신설되었다. 그렇다면 2008년 법무부개정안에서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면서 다시 그 대상을 13세 미만 아동에 한정하는 것은 근거를 찾기 어렵다.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과 같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교행위도 강간죄에 상응하도록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대상 유사성교행위는 강간에 못지않은 신체적 정신적 훼손이 발생하므로 이를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는 우리사회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해악성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강간죄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적인 성적행위로부터 단지 성기가 아니라 성적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구성요건임에 비추어, 폭행협박을 수단

으로 한 유사성교행위는 성적자유에 대한 침해에 있어서 강간죄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동등하게 처벌될 필요는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가 죽음에 못지않은 피해를 가져오거나, 유사성교행위도 강간에 못지않은 피해를 준다는 말은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수사(rhetoric)일 수는 있어도, 죄의 정도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2) 법정형가중과 중형의 문제

1) 성폭력범죄의 특별히 중한 결과에 비추어 형을 가중하고 형사절차상의 특칙을 보장하는 형사특별법의 요청은 당연하다. 역시 아동청소년대상범죄의 특별히 중한 결과에 비추어 형을 가중하고,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법적 수단과 사회보장법적 수단을 결합한 특별법의 필요성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근본적으로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치료 교화의 효과가 크지 않은 특별성 때문에 실질적 격리조치와 상시적 감시조치가 현실적인 대책이 된다. 청소년보호의 특별한 필요성은 성폭력범죄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제재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예방교육과 피해 청소년치료보호조치의 다양화, 실질화를 통해 충족될 것이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보호의 시급성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특별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겠지만, 구체적인 입법적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원칙과 체계를 고려하는 신중함과 치밀함도 필요하다.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형사제재의 확대를 주장하는 정책적 입장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나, 범죄 진압과 범죄방지의 책무도 헌법이 명하는 법치국가적 제한원칙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의 입장에서는 형사제재수단을 최후수단(ultima ratio)로서 실효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투입,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

폭력범죄 진압과 방지를 위한 형사제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실제효과는 검증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는 지적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2) 집행유예(형법 제62조)제도는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요건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단기구금형의 폐해를 줄이고 범죄자의 능동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현행법상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2008년 개정안에서 13세 미만 여자에 대해 강간죄를 범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중한 처벌의 실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이는 형사법관의 양형권한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단지 형사법관에 대해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현행 집행유예요건상 선고형 3년 기준을 회피하도록 법정형하한을 상향조정한다 하더라도, 법률상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유기징역 형기의 절반으로 감경하고(형법 제55조), 거듭작량감경사유(형법 제53조)가 있는 경우 다시 유기징역 형기의 절반을 더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또한 실무적으로 형사법관은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게 부과된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선고에 더욱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실질적 중형과 재범방지대책은 마땅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죄의 중한 정도에 따른 법정형규정의 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형을 가중함으로써가 아니라, 가석방의 요건(형법

제72조)을 개정하여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케 하거나,¹⁷⁾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제도(형법 제62조의 2) 또는 2008년 10월부터 시행될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더욱 현실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3) 각국의 강간죄 및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비교해

17)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교도소장의 심사신청단계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엄격히 판단하도록 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범죄관계의 심사사항 중 범죄의 성질, 동기, 범죄후의 정황,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가석방심사규칙 제5조), 보호관계의 심사사항 중 피해자, 그 가정과 본인과의 감정관계(동 규칙 제6조)를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범죄심리의 동기(동 규칙 제8조), 환경상의 동기(동 규칙 제9조), 사회의 감정(동 규칙 제10조)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며, 법무부장관의 가석방허가(행형법 제52조)의 정당성을 신중히 판단함으로써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의 가석방을 제한하도록 관련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가석방제도에서는 수형자의 개선정도, 재범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일반사범, 제한사범, 제외사범으로 구분하여, 인신매매, 가정과피, 조직폭력, 범죄단체조직,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제외사범으로 분류하여 원칙적으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동대상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심사규칙상 ‘제외사범’으로 분류하여 가석방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다만 가석방제도를 둔 형사정책적 의미는 수형생활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데 대한 보상과 함께 다른 수형자에 대해 수형생활의 모범이 되게 하여 구금시설내 질서를 유지한다는데 있다. 또한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하고,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는데도 의의가 있다.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 가석방을 극히 제한하게 된다면 수형기간중 교정교화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갇혀 있는 의욕을 상실하고 자포자기에 빠져 이른바 ‘처우곤란자’가 되어 교정행정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에 특화된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정시설 수용인원조정이나 재범 위험성 없는 수형자에 대한 비용절약과 같이 가석방제도를 통한 교정행정의 탄력적 운영문제는 재범의 상당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격리의 필요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내무성장관(Home Secretary)의 지침(direction)에 따라 (1991년 형사사법법 Criminal Justice Act 제32조6항) 가석방심사위원회 (Parole Board)의 심사를 거쳐 가석방처분이 행해지는데, 가석방허가기준에 있어서 중범죄자의 경우 범죄자개인의 가석방에 따른 이익보다 사회와 시민보호가 우선고려사항이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죄질과 범죄정황,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에 대한 위협의 여지, 의학적 정신병리학적 위험성을 다른 범죄에 대해서 더욱 중하게 평가한다. 따라서 마약범죄자에 대해서는 75%, 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51%가 가석방이 허가되는데 비해,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30%에 불과하다.(Report of the Parole Board, 2003-2004) 그리고 전과경력이 없다는 사실이 성폭력범죄 이외의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허가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반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고려사항이 되지 않고, 범죄사실을 자인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극히 드물다(The Parole System at Work : a study of risk based decision-making, Home Office Research Study 202,2000). 또한 영국의 가석방규칙에 따르면, 가석방심사기준에 성폭력범죄피해자의 의견,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The Parole Board Rules 2004). 특히 성폭력범죄피해자는 성폭력범죄자의 가석방허가심사에 있어 의견을 제시하고, 가석방여부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를 가진다(Domestic Violence and Victims Act 2004, Part 3). 이처럼 영국의 경우와 같이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제한요건뿐만 아니라, 가석방심사에서 피해자의 의견도 합당한 경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할 것이다.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연방법)	영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중한성적학대행위 (동일진과재범의 경우 무기)	강간죄 (무기)	강간죄(2년 이상 구금형)	강간죄 (구금형 15년)	강간죄 (2년 이상 구금형)
미성년자성적학대 행위(15년 이하 구금형)	13세 미만 간음죄 (무기) 16세 미만 간음죄 (6월 이상 2년 이하 구금형)	미성년피보호자에 대한 성폭력 (3월 이상 5년 이하 구금형) 14세 미만 간음추행죄 (6월 이상 10년 이하 구금형) 14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 구금형)	15세 미만 미성년자강간죄 (구금형 20년)	아동에대한음행 (10년 이하 구금형 또는 300만엔 이하 벌금)

이러한 단순비교는 각국 형법의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체계와 그 의미가 상이하기 때문에 의미가 크지 않겠지만, 우리 형사법체계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법정형의 단순한 수치비교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실제집행내용과 효과적인 재범방지대책의 여부다.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요구는 현장에서 범죄와 피해자의 현실에 직접 접한 시민의 분노와,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형사사법체계가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에 관대하고 피해자보호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청소년보호시민단체들의 비판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형벌의 증가추세는 형사제재가 너무 관대하다는 대중의 일반적 인식을 바꾸는데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¹⁸⁾ 따라서 형사제재

18) C.Cobley, Sex Offenders,2005,260-261면.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더 나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또한 국가도 형사제재에 대한 시민여론에 관한 더 충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

4. 결 론

성폭력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형사정책이나 법률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회적 사건에 들끓다가 흐지부지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력이 필요하다. 형법의 상징적 정치적 동원은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며, 인권침해의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의 대상범위와 공정한 절차, 재심과 구제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라는 요청으로 경청하고 제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은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개별적으로 부각되는 이슈를 단순히 뒤쫓아 가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며, 변화된 범죄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터잡아 의제를 정립해야 한다.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는 이른바 강력범죄, 폭력범죄 중 하나의 범죄유형으로서 전통적인 형법이론과 형사정책 틀 안에서, 그 범죄적 특성과 정책적 차별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다. 물론 성폭력범죄의 내용적 본질이 21세기의 형사정책 의제에서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가정과 직장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던 성폭력범죄가 공론화되고, 인터넷 환경과 같이 새로운 성폭력범죄서식지가 생겨나고 있다. 반면에 전자팔찌, 위성추적장치, 인터넷상의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와 같이 새로운 범죄투쟁수단도 활용가능하게 되었다. 범죄의 양상과 형사정책수단의 내용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사이버 공간은 성폭력범죄가 창궐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성폭력범죄에 대한 효과

19) Home Office, Making Punishment Work - Report of a Review of the Sentencing Framework for England and Wales, 2001.

적인 투쟁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싸움은 이중적이고 복잡적이고 다차원적인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정책에 따라 엄벌위주의 대처를 되뇌이는 것도, 반면 형사정책적 대응수단들에 대해서 관성적으로 인권침해라 비판하는 것도 성폭력범죄현실에 성실히 대면하지 못하는 태도다. 성폭력범죄 대책에서는 인권감수성만큼이나, 현실감수성도 중요하다. 정당성과 효율성을 모두 성취하는 형사입법과 형사정책을 위해서는 성폭력범죄 재범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에 터잡아,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법제도와 정책을 다차원적으로 구축하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교육을 통한 재범방지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성폭력범죄 연구기반의 구축과 공론(informed opinion)의 형성

우선 성폭력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정책수단의 도입검토에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개선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치료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에 따른 장·단기적 효과에 대해서 형사입법자와 형사정책결정자에게 확실하고 뚜렷한 방향과 근거를 제시해 줄만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현재로서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상습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찾을 수 없다. 치료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의 경우도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형사사법자원을 투입해야 어느 정도의 장기적 단기적 치료와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성폭력범죄자들의 범죄특성상 개선치료의 효과에 대한 현실적 기대수준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범죄경력이 지속될수록 더 심각해지고,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성폭력범죄성

향이 더욱 고착적이 되는데다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기방어적이고 전면적인 부인의 태도를 보이는 피학대경험의 상처를 지닌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료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내지 어려움이 국가의 상습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개선에 대한 노력의무를 포기할만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성폭력범죄재범방지의 형사정책결정자들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일방의 편향된 여론과 함께 근거가 부족한 사회과학적 연구들도 경계해야 한다. 또한 경험적 사회조사의 기계적 맹신은 사회문제에 대한 조사분석의 결과가 주어지면 범제도로 옮겨지기만 하면 된다고 오해하는데 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은 성폭력범죄자의 개선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결과의 문제가 아니다. 범죄자의 개선교화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재사회화이념은 과학적 자료에 의해 구성된 이념이 아니라 인간본성과 가능성에 대한 이성적 판단과 정치적 의지의 결과다.

사회학적 조사결과 설사 성폭력범죄자의 개선가능성이 적다는 결과가 나온들 한정된 자료에 바탕한 추론일 뿐이다.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재사회화프로젝트의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반대의 결과라 한다면 프로젝트의 재성찰의 기회로 삼으면 될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은 인간본성의 뿌리에는 뽑아낼 수 없는 최악의 본질과 함께 개선의 가능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이성적 믿음과 이에 대해 재사회화에 사회적 자원을 투입할 가치가 있다는 규범적 의지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지, 경험적 조사결과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문제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여론과 치료처우가 필요하다는 이른바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발언이 되풀이되고, 뒤이어 입법부와 행정부의 각종 법률개정안이 제기되다가 여론의 관심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법과 정책프로그램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형사정책에서, 특히 성폭력범죄문제에서 여론(public opinion)은 신뢰할 만한 기반이 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공론(informed opinion)이다.

지속적 실천노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공론은 물론 성폭력범죄현실에 대한 객관적 연구기반이 먼저 구축된 후에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공론의 바탕위에서는 성폭력범죄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입법과 형사정책수단을 둘러싼 논의도 비로소 생산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나 성폭력범죄방지에 대한 기대 모두 전자감시에 대한 일정부분 오해에 기대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계획되고 실행중인 전자감시제도는 일정시간, 일정기간, 일정장소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소재과약을 위한 간접적인 감시를 통한 범죄억제수단일 뿐이지, 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국가가 들여다보는 감시제도도 아니며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감시시간이외에 또는 감시장소 내에서 교묘하게 저질러지는 범죄발생을 실제 저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과도한 인권침해의 우려도 재범방지의 효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근거가 없다.

(2) 법원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양형정책의 합리화

성폭력범죄와 재범방지대책에서 범죄규정의 신설과 형의 가중을 비롯한 입법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양형판단을 통해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의 성폭력범죄 양형정책에 대해서도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때다.²⁰⁾

20) ‘법관들 사이에서 성폭행사건 재판을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성폭력사건이 주로 재범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며,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새삼스럽게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형사재판부 재판장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종전에서 실행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구속을 했다. 또 성폭력 사건 재판의 경우 피해자들이 전자법정을 이용해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그동안 성폭력 사범이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내린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판사들 사이에 일고 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한 여성 법관은 “대부분 재판부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성폭력 사범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며 “초범이라도 범행의 정도를 따져서 엄한 양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고 정말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이제까지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태도에 대해서는 남성중심적 사법부의 한계와 관대한 형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단편적인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 양형판단과 정책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합리적 양형정책에 대해 의견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이른바 ‘엄한 양형’에 대한 요청은 성폭력범죄에 대해 실효성없이 지나치게 상향된 법정형에 따라 중형을 선고하라는 의미가 아닐 것이다. 다른 강력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관행에 기대는 관성이 있다면 반성해야 하며, 성범죄자의 범죄성에 대한 과학적 판단을 위해 법관이 관련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전담재판부의 설치에 그치지 않고, 형사법관 모두가 성폭력범죄양형판단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여성법관을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에 바탕을 둔 양형판단을 요청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법원의 성폭력범죄 양형정책에 대한 논의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며 “강제추행도 강간보다 심각한 사안이라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의 한 판사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인지 변태적 기질이 있는지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양형에서는 모든 과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실형이나 전자팔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 법관은 “성폭력 사범을 기계적으로 재판하지 말고 범죄 계획의 유무와 상습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강간당한 여성이 피고인을 이후에도 만났거나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간으로 판단, 무죄를 선고하는 판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에만 유일하게 운영되는 성폭력 전담재판부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하고 해당 재판부에 여성법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고등법원 형사재판부에는 여성 법관이 한명도 없다. 그동안 사법부가 성폭력 사건 등 여성 관련 범죄에 대해 남성 중심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비판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이 립 사법연수원 교수는 “남성법관이 피해자를 이해하기 힘든 것처럼 여성법관들도 남성 피고인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사법부와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사범은 물론 피해 여성과 아동 지체장애인들의 심리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내일신문 2006년 3월 9일자).